

연구보고 R353/1996. 12

한말-일제초
농촌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사례

박 석 두 책임연구원

비

면

머 리 말

이 연구보고서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에 있는 류씨가에서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작성한 방대한 양의 문서 중 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련된 문서를 활용하여 오미동 마을의 신분계층별 구조와 농지소유 및 경작 구조,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각급 향약조직과 각종 계조직의 운용 실태 등을 분석한 것이다. 류씨의 고문서를 분석하는 연구는 1993년에 류씨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1994년에 류씨의 수지 변화에 관한 연구, 1995년에 토지소유와 지세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거쳐 이 연구로써 일단 끝을 맺게 된다.

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는 농업경제사 분야에서는 생소할 뿐 아니라 일반 국사학 분야에서도 근년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게 된 주제이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다루는 1900년대 전후 시기는 동학혁명, 갑오개혁, 한말 의병,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근대적인 금융·재정 개혁, 사회적으로는 신분제 폐지 등에 착수하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정치·경제·사회적 소용돌이의 근저에서 농촌 마을의 사회경제 구조와 주민조직은 어떻게 변하고 있었을까. 이 연구는 바로 그 점을 구명코자 한 것이다.

부족하나마 이 연구가 이 분야의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소중한 자료를 작성·보존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 준 류씨가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199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제 1장 서 론

1. 연구 목적 1
2. 이용 자료 2
3. 연구 방법과 범위 4

제 2장 오미동의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

1. 오미동의 호수 변화 6
2. 오미동 가호의 신분계층별 구성 14
3. 오미동 가호의 경제적 계층 구성 25

제 3장 한말의 지방통치와 구례군의 향약조직 운영

1. 조선시대 지방통치방식과 향촌사회조직의 변화 30
2. 1893년의 「鳳城鄉約」 40
3. 土旨面約과 土旨面の 운영 45
4. 五美洞約과 五美洞의 운영 54

제 4장 각종 계 조직의 운영 실태

1. 文化柳氏 宗中契의 운영 실태 59
2. 기타 각종 계의 구성과 운영 71

제 5장 요약 및 결론 80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오미동의 총호수 추이, 1871~1922	10
표 2- 2 오미동의 호수 변동 내역, 1902~1909	11
표 2- 3 오미동의 전답별 및 자소작별 답 면적과 비율	17
표 2- 4 오미동의 경작 규모별 호수와 비율	17
표 2- 5 1890년대 토지면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	18
표 2- 6 대구부 호적대장의 신분 호수와 구성비	19
표 2- 7 1890년대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	20
표 2- 8 1890년대 토지면 가구의 신분계층별 자소작 농지	21
표 2- 9 1890년대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자소작 농지	21
표 2-10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가옥 형태	22
표 2-11 1902년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	24
표 2-12 오미동의 경작규모별 농가 호수, 1909	26
표 2-13 오미동 농가의 농지소유 실태, 1911	26
표 2-14 오미동의 농지소유규모별 호수, 1911	27
표 2-15 오미동의 농가유형별 호수와 경지이용 형태, 1911	28
표 2-16 오미동의 농가유형별·경작규모별 농가 호수, 1911	28
표 2-17 오미동 농가의 경작규모별 계층 이동, 1909~11	29

제 3 장

표 3- 1 봉성향약 가입자의 신분별 구성, 1893	42
표 3- 2 읍·면·동약의 임원	43

표 3-3 동별 토지면약 가입자의 신분, 1893	50
-----------------------------------	----

제 4 장

표 4- 1 1913년 「문화류씨계안」의 재정 운용 추이, 1913~25	67
표 4- 2 고정파 종계의 수입금 지출 내역, 1925	69
표 4- 3 토지면의 마을별 술발 소유자 수와 송계금 납부 상황, 1904	78

빈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소재 류씨가에서 3대에 걸쳐 작성 보존해온 고문서를 이용한 사례연구로서, 19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계속 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4년차 연구이다.

- 1년차(1993년): 류씨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 2년차(1994년): 류씨의 收支 변화에 관한 연구
- 3년차(1995년): 토지소유와 지세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4년차(1996년): 오미동의 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3년차까지의 연구에서는 류씨의 가계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와 지세제도, 농업경영 및 가계수지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면, 4년차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류씨의 거주지인 오미동 마을 차원으로 확대하여 마을 단위의 사회구조와 마을 내 사회조직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오미동의 호수 변화와 주민의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
- 읍·면·동약의 구성과 운영 실태
- 면·리의 재정 운용 실태
- 오미동 내 각종 계 조직의 운영 실태

요컨대, 1890-1920년에 오미동에는 몇 호가 살고 있었으며, 그 신분적·경제적 계층 구성은 어떠한가. 그들은 면 단위 이하의 행정기구와 어떻게 연계되었으며, 어떤 사회조직을 조직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파악코자 하였다.

2. 이용 자료

류씨가 소장 자료 중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구례군 읍약과 호포전 및 社還 관련 자료, 토지면 면약과 面錢 관련 자료, 오미동 동약과 오미동 洞錢·洞穀 관련 자료, 류씨가 종중계와 養老契·松契·輔仁契 등 각종 계 관련 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한 자료해설이 되어 있으므로¹ 여기서는 자료의 목록만을 들기로 하겠다.

① 구례군 邑約 관련 자료: 鳳城鄉約籍(爻周冊), 鄉約錢捧上冊, 鄉約錢各面逐戶播殖冊, 求禮邑鄉約條, 邑約(追入記), 邑約錢會計記(이상 1893년), 鄉約章程(1894), 邑錢會計記(1895), 求禮郡鄉約約則草案(1935).

② 구례군 戶布錢 관련 자료: 求禮縣各郡丁均布成冊(1871), 甲午倉結斂中還推條記, 下帖土旨面鄉員及各洞里正統首, 乙未六月二十五日求禮邑戶布錢排記, 乙未六月二十五日下帖土旨面鄉員及各洞里正, 下帖土旨面鄉員及各洞里正, 下帖土旨面鄉員, 下帖土旨尊位(이상 1895).

③ 구례군 社還(還穀) 관련 자료: 社還條例(1895).

¹ 국립민속박물관, 1988, 「구례운조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구례군 사회조직 문서」

④ 토지면 面約 관련 자료: 土旨面約節目(1814), 土旨面新執鳩財冊(1890), 土旨面鄉約函所藏諸件記(1904), 土旨面首尊位案冊(1892), 土旨面邑鄉約人名錢數成冊(1893), 土旨面面鄉約人名錢數成冊(1893), 鄉約錢邑面條播殖都合冊(1893), 邑約錢(1893), 邑鄉約錢條(1893), 土旨面鄉約籍(1893), 土旨面鄉約任司案(1893), 土旨面鄉約會費記(1893), 土旨面鄉約講會費成冊(1893), 私通面中(1893), 土旨面鄉約講信會費成冊(1893), 土旨面邑約入籍人(1893), 土旨面邑約錢(1893), 土旨面約錢(1893), 土旨面都鄉約入籍員數記(1893), 土旨面都鄉約入員記(1893), 土旨面約入籍員數記(1893), 土旨面約會下記(1895), 土旨面約錢及邑約錢利條收捧冊(1902~04).

⑤ 토지면 公錢 관련 자료: 土旨面各公錢排下都合冊(1890~96), 土旨面新舊鳩財冊(1892), 土旨面各樣排下節目(1892), 土旨面中錢收利取殖冊(1892~94), 土旨面中有本錢收利取殖冊(1892~95), 面錢各洞均殖成冊(1893~94), 面用下記(1895), 面中成冊(1894~95), 土旨面會記(1895), 各洞公錢未收冊(1895), 各洞未收公錢記(1895), 土旨面公貨查實冊(1893), 土旨面春等各公錢名目已納成冊(1895), 土旨各公錢春等收利記(1895), 補利秋等條(1895).

⑥ 토지면 관련 기타 자료: 五家點考件記(1893), 洞有司統長記(1893), 土旨面各洞里正姓名成冊(1895).

⑦ 오미동 동약 관련 자료: 洞約讀法(1893), 土旨面美洞鄉約錢邑面條播殖冊(1893).

⑧ 오미동 公錢 관련 자료: 五美洞各公錢有無本播定記(1880), 土旨面五美洞本還米分殖成冊(1893), 美洞本還七石四斗均殖記(1893), 美洞各錢穀可攷并記冊(1893~1900), 美洞事目冊(1898~1902), 美洞事目冊(1902~1905), 洞米分給記(1905~07), 洞租分給記(1907~09), 洞租分給記·洞租收捧記·戶布分排記(1907~09), 土旨面五美洞學校錢播殖成冊(1908), 五美洞大同之役免闕及出闕日記(1913), 五美洞錢穀冊(1916~22), 美洞讀書齋鳩財金鼓文(1899).

⑨ 오미동 관련 기타 자료: 五美洞閭史(1908).

⑩ 文化柳氏 宗中契 자료: 文化柳氏大宗契案(1878), 文化柳氏次宗契案(1878), 文化柳氏宗契案冊(1887), 文化柳氏重本券正案(1913~25), 文化柳氏

大宗契案(1924~25), 五美文化柳氏大同契(1924~25), 文化柳氏契案(1925).

① 養老契 자료: 養老契案(1898~1920).

② 松契 관련 자료: 土旨面松契及面會條約(1902), 土旨面所在松田及主管人姓名冊(1902), 土旨面內松田斫伐時出標冊(1902~03), 土旨面約正副正書目(1902), 下帖土旨面中及松有司各洞洞首(1902), 松契有司傳張記(1902), 私通面中(1903), 私通各洞中附松契局錢記(1904), 壬戌秋放覽記(1922).

③ 기타 계 자료: 輔仁契(1932).

④ 오미동의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에 관한 자료: 土旨面家座成冊(1890, 1895), 柒錄冊 중의 戶外雇丁春秋使役件(1902-1907) 및 新起田畝調查收稅記(1905-1927), 隆熙三年四月五日美洞新結冊(1909), 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粟冊(1911), 五美洞正火結數正冊(1913), 農家日記(1912~42), 地稅分定記(1914~41), 金谷(穀)收支帳(1906-1920).

3. 연구 방법과 범위

3.1. 연구 방법

일차적으로 이상의 자료를 검토하고 집계·분석하여 오미동 마을의 인적·물적 구조와 각종 사회조직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며, 분석 결과의 해석과 의미 파악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에 그치기로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완결된 분석적 연구라기보다는 그를 위한 기초 연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의 특성상 전국적·제도적인 구조와 변화까지 포함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존 연구를 활용하기로 하겠다.

3.2.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자료의 제약상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를 대

상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오미동 마을에 한정하되 향약의 운영에 관해서는 구례군과 토지면까지의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회구조에는 가족구조나 사회생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연구기간의 한계 때문에 제외하고, 오미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으며, 그들은 어떤 행정조직과 사회조직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에 연구 범위를 한정시키기로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는 오미동의 호수 변화와 신분별·경제적 계층별 구성(제2장), 읍·면·동약과 면리제 운영 실태(제3장), 각종 계조직의 운영 실태(제4장) 등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이를 요약(제5장)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제 2 장

오미동의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

1. 오미동의 호수 변화

1.1 오미동의 총호수 추이

오미동에 거주했던 가구 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는 求禮縣各軍丁均布成冊(1871), 五美洞各公錢有無本播定記(1880), 土旨面各公錢排下都合冊 중 癸巳年九月十六日條(1893), 美洞各錢穀可攷併記冊(1893-1900) 중 ‘錢還合15량 6전 1푼 均殖記(1896. 1)’와 ‘洞米均殖記(1896. 4. 2)’, 美洞各錢穀可攷併記冊(1893-1900), 美洞事目冊(1897-1902), 戶外雇丁春秋使役件(1902-1907), 隆熙三年四月五美洞新結冊(1909), 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粟冊(1911), 五美洞正火結數正冊(1913), 五美洞錢穀冊(1916-22) 등이 있다. 이들 자료들은 작성 목적과 주체가 다르고, 따라서 일관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호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미동의 호수가 기재된 최초의 자료는 1871년 구례현에서 작성한 求禮縣各軍丁均布成冊이다. 이 자료는 구례현 내 각 면별로 호포를 배정하기

위하여 각 동리별 호수를 파악한 것으로서, 호포 배정 방식은 먼저 총 호수를 파악한 다음에 호포를 면제해주는 호수, 즉 거지 등의 무의탁호·公役 담당 호·기타 雜役 담당 호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제외한 호수에 매호당 木과 錢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호포 납부액이 면별 동리별 호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각 동리에서는 가능한 호수를 실제보다 줄여 보고하려 애썼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 기재된 호수는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나, 이는 물론 확인할 수 없다. 어쨌든 이 자료에는 1871년 오미동의 호수는 40호로 기재되어 있다.

오미동의 호수가 기재된 두 번째 자료는 1880년 12월에 오미동에서 작성한 五美洞各公錢有無本播定記이다. 이 문서는 토지면에서 오미동에 할당한 公錢을 오미동 내에서 가세에 따라 1-4등으로 구분하여 배정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자료에 기록된 오미동의 호수는 1등호 9호, 2등호 5호, 3등호 6호, 4등호 14호, 합계 34호이다. 이 문서는 이미 오미동에 배정된 공전을 오미동 내에서 호별로 할당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므로 여기에 기록된 호수는 실제 호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세 번째 자료는 1890-96년에 작성된 土旨面各公錢排下都合冊 중 癸巳年(1893)九月十六日條이다. 이 문서는 토지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명목의 公錢을 면 내 각 동리의 호수에 따라 할당하면서 작성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 기재된 오미동의 연도별 호수를 보면, 1890년 3월 15일 6호, 1890년 9월 15일 8호(이는 '새로 편집한 家座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편집한 가좌란 1890년 8월에 작성된 「吐旨面家座姓名成冊」을 말함), 1891년 3월 15일과 9월에 각각 7호, 1892년 9월 15일 7호, 1893년 9월 16일에 28호인데 이 중 17호는 면제하여 실호는 11호이며 누락된 호가 6호로서 총호수는 34호, 1894년 3월 20일 11호, 1895년 10월 7일 15호인데 1호는 참봉으로 제외하여 실호는 14호, 1896년 4월 6일 15호 중 1호는 참봉으로 실호는 14호 등으로 되어 있다. 다른 연도와 달리 1893년의 호수에 대해 상세한 내역과 총호수가 기록되게 된 것은 이 때 家座를 따로 조사하여 「別家座冊」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93년의 34호는 오미동의 실제 총호수라고 할

수 있다.²

1896년의 호수는 美洞各錢穀可放併記冊(1893-1900) 중 ‘錢還合15량 6전 1푼 均殖記(1896년 1월)’와 ‘洞米均殖記(1896. 4. 2)’에서 알 수 있다. 전자의 문서에는 33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후자에는 2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문서에 기록된 명단을 서로 대조하면 전자의 명단에 없는 이름이 후자에 2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1896년에는 전자의 33명과 후자에만 나오는 2명을 합해 35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99년의 호수는 美洞各錢穀可放併記冊(1893-1900) 중의 ‘己亥(1899)四月七日 社米分給記’에 30호, 美洞事目冊(1897-1902) 중의 ‘己亥(1899)三月二十一日’에 34호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자료의 명단을 대조하면, 후자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 전자에 1명, 전자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 후자에 6명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자료의 명단을 합하면 1899년 오미동의 총호수는 35호가 된다.

1902년의 호수는 柒錄冊 중의 戶外雇丁春秋使役件(1902-1911)에서 알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류씨가 가택인 雲鳥樓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16호, 서쪽으로 19호, 합계 35호의 가호 번호와 거주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 이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가호로서 류제양과 그의 동생 제영, 류홍규와 김낙규 등 4호가 있었다. 따라서 1902년 오미동의 총호수는 39호였던 셈이다.

1909년 오미동의 호수를 알려주는 자료로는 「隆熙三年(1909년)四月五美洞新結冊」이 있다. 이 자료는 1909년에 垡田畝의 結稅를 부담하던 오미동

² 1893년의 호수를 알려주는 자료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 吐旨面美洞鄉約錢邑面條播殖冊(1893년 5월)에는 읍약전 3냥 2전 4푼과 면약전 5냥 4전을 각각 4할의 이자율로 배정한 21명의 명단과 배정액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吐旨面五美洞本還米分殖成冊(1893년 11월)에는 10명, 美洞本還七石四斗均殖記(1893년 11월)에는 27명, 美洞各錢穀可放併記冊(1893-1900) 중 1893·94·97년조에는 2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기록된 명단을 서로 대조해보면 문서마다 다른 이름이 들어 있어 문서의 호수가 총호수가 아니며, 실제 총호수는 이들 자료에 기록된 호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자를 망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 기록된 호수는 1909년 오미동의 실제 총호수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11년의 자료인 「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粟冊」과 1913년의 「五美洞正火結數正冊」은 오미리 구역 내에 존재하는 농지 소유자별로 소유 농지와 경작자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오미동 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가호는 이 자료에 누락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오미동에는 무당이나 대장쟁이, 상점 등 농업 이외의 생업이 없었고, 머슴의 경우에도 여타 가족이 있는 머슴은 농지를 경작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기록된 호수는 정확한 실제 호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16-22년의 호수에 관해서는 「五美洞錢穀冊(1916-22)」에서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오미동 소유 錢穀의 수입·지출·식리 내역을 연도별로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의 1917년 기록 중에 1916년 11월에 총 30호의 연명부 대조에 호당 3전 2푼 7리씩 9냥 8전을 사용하였다는 기록과 총 30호에 대해 1기분 호세와 2기분 호세를 지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호세를 내지 않는 가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수치는 실제 호수거나 그보다 적은 호수일 것이다. 같은 식으로 1919년 호세 납부 호수는 28호로 기록되어 있다. 1920년에는 '私戶口'라는 제목으로 32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1922년에도 2월 1일자 기록으로 31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행정 기관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오미동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호수를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2-1>이다. 이에 의하면, 1871~1922년 기간에 오미동의 총호수는 30~40호로서 연도별로 총호수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끊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 1880~1900년경까지는 호수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호수 증감폭이 커졌으며, 1913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변동 추이는 산업화에 의한 이농 등이 전혀 없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대단히 유동성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오미동의 총호수 추이, 1871~1922

단위: 호

	1871 ¹⁾	1880 ²⁾	1893 ³⁾	1896 ⁴⁾	1899 ⁵⁾	1902 ⁶⁾	1909 ⁷⁾	1911 ⁸⁾	1913 ⁹⁾	1917 ¹⁰⁾	1922
호 수	40	34	34	35	35	39	35	36	37	30	31

자료: 1) 求禮縣各軍丁均布成冊(1871).

2) 五美洞各公錢有無本播定記(1880).

3) 土旨面各公錢排下都合冊 중 癸巳年九月十六日條(1893).

4) 美洞各錢穀可攷併記冊(1893-1900) 중 '錢還合15량 6전 1푼 均殖記(1896. 1)' 와 '洞米均殖記(1896. 4. 2)'에서 작성.

5) 美洞事目冊(1897-1902) 중 '己亥(1899) 3월 21일'.

6) 戶外雇丁春秋使役件(1902-1911).

7) 隆熙三年四月五美洞新結冊(1909).

8) 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粟冊(1911).

9) 五美洞正火結數正冊(1913).

10) 1917-22년 자료는 五美洞錢穀冊(1916-22).

1.2. 호수 변동의 내역과 원인

호수 변동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미동 가구의 유동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는 1902년과 1909년 기간에 오미동에 거주하였던 가구들의 변동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1902년에 오미동의 호수는 류씨가와 그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16호, 서쪽으로 19호 등 총 36호에 협실 거주자(셋방살이) 2호, 운조루 대지 내에 거주하던 류제양의 동생 등 총 39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1902~09년의 7년 동안에 총 15호가 전입해 들어오고 20호가 전출하였으며, 2호가 분가로 창설되고 1호가 단절됨으로써 1909년에는 35호로 감축되었다. 1902년과 1909년의 호수만을 대비하면 4호의 감축에 불과하지만, 그 내역을 보면 매년 평균 2호가 전입해 들어오고, 3호가 전출한 셈이었다.

전출자 20호의 내역을 보면, 류씨 일족이 6호였고 나머지 14호는 타성이었으며, 17호가 자의에 의한 전출이었음에 반해 2호는 행선지를 알 수 없이 이산하였고, 1호는 류씨 일족으로서 중인 계층인 아전 가문과의 혼사가 원

표 2-2 오미동의 호수 변동 내역, 1902-1909

단위: 호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합계
전입가구	-	1	1		3	6	3	1	15
전출가구	-	1	4	2	4	5		4	20
분가가구	-			1			1		2
단절가구	-		1						1
합 계	39	39	35	34	33	34	38	35	

자료: 戶外雇丁春秋使役件(1902-1911), 春秋使戶役記(1902-33), 隆熙三年四月五美洞新結冊(1909), 金谷(穀)收支帳(1906-20), 是言(1851-1922), 紀語(1898-1936).

인이 되어 쫓겨났다. 또한 전출지를 알 수 있는 16호의 행선지를 보면, 오미동 인접 마을인 환동·하죽·용두리·구만리에 4호·2호·1호·2호가 이주하였으며, 인접 면인 마산면·문척면·계사면에 3호·3호·1호가 이주하였다. 전출자 중 奴南孫(류제천)은 1904년에 계사면으로 이주하였다가 1907년에 다시 오미동으로 돌아왔으며, 申玉鏞과 鄭九來는 1906년 여름과 가을에 전입하였다가 1907년 겨울에 마산면과 구만리로 이주하였다.

전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류씨 일족으로서 오미동에서 쫓겨난 柳濟元과 그의 차남 柳玟桓의 경우뿐이다. 류민환은 종중에서 柳爾曹의 형 爾惠의 後嗣로 정함에 따라(시언, 1902.2.24), 그 해 가을에 하죽으로 이주하였으며(春秋使戶役記, 西第1戶 緣37項), 류제원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04년 2월에 “中山宅 濟元氏와 군의 衙前 高光文 사이에 혼담이 있으므로 종중에서 發論이 있어 경계 밖으로 내몰도록 하였다(시어, 1904.2.13)”고 하였는데, 그가 1907년에 구만리로 이주한 것은 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타 전출자의 전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906년 마산면 황둔으로 이주한 奴判童(柳判童)의 경우 1910년에 그의 아우 柳公岩이 류씨가 次賣身(애머슴)으로 들어와(金谷收支帳의 賣身例定金秩, 1910년) 11년과 13년에도 머슴이었다. 1906년에 이주한 李斗 또한 1899년에 류씨가 次賣身(애머슴)으로 들어와(金谷收支帳의 賣身例定金秩, 1910년) 11년과 13년에도 머슴이었다. 1906년에 이주한 李斗 또한 1899년에 류씨가 次賣身(애머슴)으로 들어와(金谷收支帳의 賣身例定金秩, 1910년) 11년과 13년에도 머슴이었다. 1906년에 이주한 李斗 또한 1899년에 류씨가 次賣身(애머슴)으로 들어와(金谷收支帳의 賣身例定金秩, 1910년) 11년과 13년에도 머슴이었다.

을 지냈으며, 1904년에 용두리로 이주한 이순종도 1900년에 류씨가 의 머슴(紀語, 1900.11.24)이었다. 1904년에 계사면으로 전출하였다가 1907년에 오미동으로 돌아온 奴南孫(柳濟千)은 1909년까지 소유농지는 물론 경작농지도 없다가 11년에 대원군 소유 논 4두락을 소작하였으며(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粟冊, 1911), 1913년에 류씨가 소유답 4두락을 소작하였다(五美洞正火結數正冊, 1913).

전입자 15호의 내역을 살펴보면, 류승환·서옥철·류제형·류학노 등은 1902년 이전에 오미동에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하였으며, 류제천은 위에서 보았듯이 1904년에 계사면으로 이주하였다가 1907년에 오미동으로 돌아왔다. 5호는 귀향이었던 셈이다. 나머지 10호 중 5호는 전입하였다가 1-2년 뒤 다시 전출하였고, 5호는 전입하여 정착하였다.

전입자 또한 전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열악하였다. 서옥철은 류씨가 의 世襲私奴 서일상의 4남으로, 1909년과 11년에 류씨가 소유의 밭 1두락과 류제영 소유 논 4두락 및 마산면 냉천리 김주홍 소유의 논 4두락 등을 소작하였다. 류승환은 1903년에 오미동에 돌아왔는데, 1904년 이후 계속 無農이다가 1908년 主事를 하면서 4등호가 되었으며(美洞社目冊, 1902-1909), 1909·11·13년에도 경작지가 전무하였다. 류제형은 류제익의 이복동생으로 형제간에 불화하여 1894-5년에 곡성군 석곡면 용주동으로 이주하였다가 1909년에 오미동으로 되돌아왔는데, 1911년에 류제표 소유의 대지에 살면서 논 4두락을 소작하다가 13년에는 류제표 소유의 논 10두락을 소작하는 순소작농이었다. 류제세(學老는 그의 字)는 1909년에 류제표 소유 논 3두락을 소작하다가 1911년에는 여기에 구례읍 백련동 거주 김운승의 논 4두락과 류제표 소유 밭 1두락을 추가 소작하였다. 1908년에 전입한 김석균은 류제표 소유의 대지에 살면서 계속해서 류제표 소유의 논 6두락을 소작하는 순소작농이었다. 朴貴業은 1909년에 류제표 소유의 대지에 살면서 밭 5승지와 논 6두락을 소작하였으며, 1913·14년과 1931년에 류씨가 의 머슴이었다(朴貴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동일인으로 생각됨). 김창조·도귀덕·서인중·이돌치 등도 모두 순소작농이었다.

한편, 전입전출 외에 오미동 마을 안에서의 이사도 활발하여 6호가 1회 이상 이사하였는데, 그 중 4호가 1회, 1호가 2회, 1호가 3회에 걸쳐 이사하였으며, 또한 4호는 협실에 살다 독채로 이사한 반면 1호는 독채에서 협실로 이사하였다. 마을 안에서 이사를 가장 많이 한 박명복은 류씨가 의 私奴로서 1932년에는 류씨의 머슴을 살았으며, 2회 이사한 奴萬興(과부 하씨)은 1909년에 협실로 내려앉았다. 김봉준이 1906년에 사망하자 그의 처 강소사는 서계 1호에서 8호로 이사하였다. 奴万葉(류제혁)은 1911년에 밭 1두락과 논 7두락을 소유하고 논 5두락을 소작하던 자소작농으로서 오미동에서는 비교적 상층농에 속하였는데, 그는 새 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협실에서 살다 독채로 이사한 4인은 모두 1902년 이전 전입자들로서, 처음에는 협실에서 살다가 조상순이 1903년, 김낙규가 1906년, 박상봉과 류내화가 1907년에 독채로 이사하였다. 이들은 물론 순소작농이었으며, 조상순은 류씨의 私奴인 서일상의 2녀 仙女와 혼인하였고, 1903년에 류씨의 머슴을 지냈다.

결국, 오미동 안팎으로 전입전출과 마을 내에서의 이사가 활발하였던 까닭에 1902~9년에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동일 가옥에서 거주한 가호는 13호에 불과하였다. 그 중 류씨 일족이 8호였으며, 타성이 5호였다. 타성 5호 중 崔學鳳과 李仁瑞는 남원에서 전입하였으며, 柳又石은 오미동 인접 마을인 환동에서 전입하였고, 朴石奉과 金完石은 류씨의 私奴 출신이었다.

이처럼 전입·전출·이사 등이 활발하였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협호(셋집)와 협실(셋방) 거주자가 많았다. 1911년 자료에 의하면 29호가 가대를 소유하지 못한 채 류제양가의 협호로 살았고, 1895년 자료에 의하면 6호가 협실에서 살았으며, 위에서 보았듯이 1902-09년 기간에도 4호가 협실에서 살다 단독가옥으로 이사하였으며, 1호는 협실로 내려앉았다. 둘째, 하층 신분 출신자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閑良·私奴·束伍 등 하층민이 1890년에 6호, 1895년에 5호였으며, 1902년에 7호였는데, 이들 중 5명은 1900-40년에 류씨의 머슴을 지냈다. 셋째, 위에서 보았듯이 전입전출자 대부분이 경제적 빈곤층이었을 뿐

만 아니라 오미동의 대부분의 가호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작농이었다. 즉, 1911년의 자료에 의하면 34호 중 23호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였고, 농지소유자 중에서도 8호는 전답 합계 10두락 미만의 소유자였다. 또한 19호가 순소작농으로서 호당 평균 5두락의 전답을 경작하였으며, 농사가 전무한 무농이 1895년에 6호, 1909년에 5호, 1911년에 4호였다. 넷째, 동족 반촌 마을로서의 전통적 관행이 강하였다. 증인계층인 아전 집안과의 혼사를 이유로 류씨의 일족을 동네에서 추방하기로 한 것이라든지, 후술하듯이 류씨의 종중계가 강고하게 존속된 것 등이 이를 말하며, 이로 인해 류씨 아닌 타성 가호는 이들의 유형무형의 지배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900년대는 나라 전체가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 한말 의병전쟁, 한일합방 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음으로 양으로 이 지역의 농민들 또한 불안정한 사회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2. 오미동 가호의 신분계층별 구성

2.1. 1890년대 토지면과 오미동의 신분계층별 구성

1890년대 오미동과 토지면에 거주하는 가호의 신분계층별 구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는 1890년에 작성된 「吐旨面家座姓名成冊」과 1895년에 작성된 「吐旨面家座冊」(이하 모두 「家座冊」으로 약칭함)이 있다. 이들 자료는 당시의 실상을 정확히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오미동과 토지면의 신분계층별 구성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먼저 이들의 자료적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90년과 95년 「家座冊」의 문서 양식은 동일하다. 토지면 내의 마을별로 호주의 신분직역·성명·나이와 생년·본관, 처의 성씨·나이와 생년·본관, 슬거가족의 성명·나이, 동생이나 아들의 처의 성명·나이와 생년·

본관, 거주 가옥의 유형과 칸 수, 소유 혹은 경작 전답의 두락 수, 농우 수, 戶名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항목과 마을별 가호가 정확히 조사되어 있다면 면·리 단위의 사회경제상을 파악하는 데 이보다 좋은 자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가 있다.³

① 1895년 「家座冊」에는 32개 마을이 수록되어 있는데, 1890년에는 20개 마을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토지면은 外面과 內面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1890년 「家座冊」에는 피아골과 한수골에 위치한 마을이 제외되었던 것이다.

② 1890·95년을 막론하고 수록된 마을별 호수는 실제 호수보다 훨씬 적게 파악되었다. 이 사실은 1893년에 토지면에서 별도로 조사하였던 ‘별가좌’ 조사⁴에 나타난 마을별 호수와 비교, <표 2-1>의 오미동 호수 변화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 자료에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는 外面 마을의 총 호수는 1890년 자료에 戶總 340호, 1893년 자료에 戶總 456호와 漏戶 61호 및 합계 517호, 1895년 자료에 戶總 409호와 漏戶 13호 및 합계 422호로 나와 있다. 오미동의 호수만을 비교하면 1890년에 13호, 1893년에 34호, 1895년에 23호로 나와 있는데, <표 2-1>에서 보듯이 오미동의 호수는 1871년에 40호였으며, 1899년까지 오미동의 호수는 35호 수준이었음에 비추어 1893년의 호수는 실제와 부합되는 반면, 1890년과 95년의 호수는 실제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93년의 호수와 비교하면 1890년의 호수는 65.8%, 1895년의 호수는 81.6% 수준이었다고 하겠다. 당시 賦稅制度가 동리별 ‘洞布·洞錢·洞漚’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가좌책」에는 率戶와 挾戶가 제외되고 課稅戶 혹은 立役戶만이 수록되었거나 時存家座戶가 아닌 元定官戶만이 수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이종범, 1994, 24~25쪽). 「가좌책」

³ 「家座冊」에 수록된 자세한 내용과 자료로서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는 이종범, 1994, 17~35쪽 참조.

⁴ 「吐旨面各公錢排下都合冊」. 1893.9.16에는 ‘別家座條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21개 마을에 대해 총호수와 누락호수 및 이의 합계호수, 면전 배정시 제외되는 내역별 호수 등이 마을별로 기재되어 있다. 1893년에 토지면에서 별도의 가좌조사, 즉 ‘별가좌’ 조사를 하였던 것이다.

의 호수가 실제보다 축소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가좌책」에는 가구주 외에 솔거가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으며, 성혼하여 분가한 가호가 솔거호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가좌책」의 가구주 1호당 솔거가족 수는 1890년과 95년에 호당 평균 1.38명과 1.39명이었으며, 가구주를 포함한 호당 평균 인구는 2.38명과 2.39명에 불과하였다. 오미동 류씨가 경우만을 보면, 1890년과 95년에 동일하게 가구주 류제양(45세)과 처 허씨, 奉母 최씨, 率弟 류제영(40세)과 처 유씨(32세)만이 기록되어 있고, 류제양의 자녀 6명(1890년 당시)과 7명(1895년 당시)은 제외되어 있다.

④ 「가좌책」에서는 가구별 전답 경작 면적도 축소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류씨가 경우 1890년에 己畓(자작지를 말함) 20두락과 己田 3두락, 95년에는 己畓 15두락과 己田 3두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898년에 류씨가에서는 '流來家作'이라고 하였던 논 46두락과 밭 5두락을 자작하였다(秋收冊, 1898~1908). 이 자작지 면적은 1908년에 논 24두락으로 축소되고, 1915년에는 논 10두락과 밭 4두락으로까지 축소되지만, 1902~07년까지는 당전평 자작지 33두락 중 2두락만 소작을 주었다. 이로 보아 「가좌책」에서의 자작답 20두락과 15두락은 실제보다 축소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좌책」의 기록은 당시의 실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전답 구성비, 자작지와 소작지 비율, 경작규모별 호수 비율 등을 1909년과 11년에 작성된 「隆熙三年四月五日美洞新結冊」 및 「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粟冊」의 기록과 대비하면, <표 2-3><표 2-4>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가좌책」의 농지 면적은 1909년과 11년 자료의 1/3 수준에 불과하나 전답별 비율이나 자소작답 면적 비율은 별 차이가 없으며, 경작규모별 구성비의 경우도 대체로 납득할 만한 차이 외에는 비슷하다. 따라서 「가좌책」의 자료를 통해 당시의 실정을 파악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3 오미동의 전답별 및 자소작별 답 면적과 비율

		면 적(두락)			비 율(%)		
		1890	1895	1909	1890	1895	1909
전답별	답	82	75	259.30	93	86	92
	전	6	12	21.66	7	14	8
	합계	88	87	280.96	100	100	100
자소작별	자작답	60	35	131.50	73	47	51
	소작답	22	40	127.80	27	53	49
	합계	82	75	259.30	100	100	100

자료: 이종범, 1994, 46~47쪽에서 인용.

표 2-4 오미동의 경작 규모별 호수와 비율

	호 수(호)			비 율(%)		
	1890	1895	1911	1890	1895	1911
무 농 지	1	6	4	8	32	12
- 5두락	7	7	15	54	37	44
5-10두락	3	4	8	23	21	23
10-20두락	2	1	4	15	5	12
20두락이상	-	1	3	-	5	9
합 계	13	19	34	100	100	100

자료: 이종범, 1994, 46~47쪽에서 인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좌책」에는 가구주와 솔거인의 성명 위에 각각의 신분직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망라하여 토지면의 신분직역별 인구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토지면에는 수령(府使를 지낸 단산리의 이현식) 1호를 비롯하여 참봉·司果·통정대부 등의 직첩이 내려진 班戶가 1890년 3호, 95년 6호(外面만 3호)가 있었으며, 私奴·巫夫·屠漢·冶匠 등의 특수직역호가 1890년에 19호, 95년에 23호였다. 이들 소수의 반호와 천역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幼學(1890년에 77%, 95년에 79%)이었으며, 閑良도 적지 않았다(1890년에 8%, 95년에 10%). 유학과 한량은 원래 문무 관직에 나가지 못한 예비집단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그것과 상관 없이 일반화되었던 것이며, 특히 한량의 경우 유학보다 아래의 양인과 비슷한 칭호로 되었던 것이다.

표 2-5 1890년대 토지면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

		호 수(호)				비 율(%)			
		1890년 (外面)	1895년			1890	1895		
			外面	内面	합계		외면	내면	합계
A	수령	1	1	-	1	83	84	84	84
	사과	0	2	-	2				
	참봉	1	1	1	2				
	통정대부	1	1	-	1				
	유학	246	277	193	470				
	오위장	2	2	-	2				
	동몽	11	8	6	14				
과부(氏)	6	7	-	7	11	11	14	12	
B	한량	26	32	30					62
	양인	1	1	-					1
C	과부(召史)	9	8	3	11	6	5	2	4
	사노(속오)	15	12	-	12				
	야장	0	1	1	2				
	무부	4	4	4	8				
	도한	0	1	-	1				
합 계		323	358	238	596	100	100	100	100

신분직역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를 이른바 양반·상민·천민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좌책」의 표기 방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관직을 받은 班戶와 幼學의 경우 처의 성씨는 某氏(예컨대 김씨)로 표기되어 있으며, 반드시 奴福乃와 같은 식의 戶名이 下記되어 있다. 한량의 경우 처의 성씨는 某姓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 某氏로 표기된 것도 있으며, 전자와 후자에 관계 없이 호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양인의 경우 처가 있는 경우는 1890년의 1호에 불과한데, 「妻金召史」로 표기되어 있고, 호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반면, 1895년의 양인 1호는 홀아비인데 호명이 표기되어 있었다. 私奴·巫夫·屠漢·冶匠은 처의 성씨가 某姓으로 표기되어 있고, 호명이 없었다. 寡婦의 경우 某氏로 표기된 경우도 있고, 召史로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 모두 호명이 있었다. 동몽의 경우 奉母 某氏로 표기되어 있는데, 1890년의 1호(양안리의 酒店 朴洛喜)는 某姓으로 기재되었다가 95년에 한량으로 기재되었고, 호명이 있었다.

표 2-6 대구부 호적대장의 신분별 호수와 구성비

	호 수(호)				비 율(%)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합계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합계
1690년	290	1,694	1,172	3,156	9.2	53.7	37.1	100.0
1729·32년	579	1,689	824	3,092	18.7	54.6	26.6	100.0
1783·86·89년	1,055	1,616	140	2,811	37.5	57.5	5.0	100.0
1858년	2,099	842	44	2,985	70.3	28.2	1.5	100.0

자료: 四方博, 朝鮮社會經濟史研究, 圖書刊行會, 1976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처의 성이나 과부의 성이 某氏로 표기된 가호(A), 한량과 양인 및 소사로 표기된 과부 등의 가호(B), 私奴 이하의 가호(C)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른바 양반층에 속하는 계층이 1890년의 83%에서 95년에 84%로 약간 늘었고, 양인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의 비율도 11%에서 12%로 늘었는데, 천역층의 비율은 6%에서 5%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연구사상 처음으로 호적대장을 이용하여 신분계층별 구성을 연구한 시카타히로시(四方博)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자. <표 2-6>은 그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양반호가 현저히 증가하고, 노비호가 격감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양반호의 비율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 사이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상민호의 격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상민호가 양반호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비호의 비율은 이 시기에는 약간 줄었을 정도였다. 토지면 「가좌책」의 연대가 1890·95년임을 감안하면 양반층 비율이 83%와 84%였다는 것은 대구부의 추세와 비교할 때 대단히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지면 중에서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을 따로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오미동의 경우 1890년에 비해 95년에는 양반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천민층의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는 같지만, 두 해 모두 토지면 전체에 비해 양반층의 비율이 훨씬 낮은 반면 천민층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2-7 1890년대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

		호 수(호)		비 율(%)	
		1890	1895	1890	1895
A	수령	-	-	53.8	73.7
	사과	-	-		
	참봉	1	1		
	통정대부	-	-		
	유학	5	12		
	오위장	-	-		
	동몽	1	-		
	과부(氏)	-	1		
B	한량	-	1	-	5.3
	양인	-	-		
	과부(召史)	-	-		
C	사노	6	4	46.2	21.0
	야장	-	-		
	무부	-	-		
	도한	-	-		
합 계		13	19	100.0	100.0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분제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회적으로는 하층민의 경우 양반층으로부터 천대와 모멸을 받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도 과연 그러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가좌책」을 통하여 신분계층과 농지소유 및 경작규모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면 전체 가호의 신분계층별 농지소유에 대해 정리한 것이 <표 2-8>이다. 이에 따르면, 1890년에 양반층 267호의 전답 경작규모는 호당 평균 7.6두락, 양인층 37호의 그것은 3.5두락, 천민층의 그것은 3.7두락이었다. 이로 보면, 양반층과 이하층 간에는 호당 경작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양인층과 천민층의 호당 경작규모는 천민층이 미세하나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95년에는 신분계층별 호당 경작 규모가 4.6두락, 1.8두락으로 모두 축소되었는데, 이는 95년 자료에 농지가 협소한 內面 마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95년에는 3계층의 호당 경작규모는 거의 유사해졌으며, 양인층보다 천민층의 규모가 더 크게 되었다.

표 2-8 1890년대 토지면 가구의 신분계층별 자소작 농지

면적 단위: 두락

	1890년(외면)								1895년							
	호수	자작지		소작지		합계		호당 전답	호수	자작지		소작지		합계		호당 전답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A	267	281	223	1,479	46	1,760	269	7.6	499	197	361	1,725	10	1,922	371	4.6
B	37	8	12	108	1	116	13	3.5	73	-	13	117	-	117	13	1.8
C	19	-	2	68	-	68	2	3.7	23	-	-	65	-	65	-	2.8
계	323	289	237	1,655	47	1,944	284	6.9	596	197	374	1,907	10	2,104	384	4.2

표 2-9 1890년대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자소작 농지

면적 단위: 두락

	1890년							1895년								
	호수	자작지		소작지		합계		호당 전답	호수	자작지		소작지		합계		호당 전답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A	7	60	6	6	-	66	6	10.3	14	35	12	26	-	61	12	5.2
B	-	-	-	-	-	-	-	-	1	-	-	-	-	-	-	-
C	6	-	-	16	-	16	-	2.6	4	-	-	14	-	14	-	3.5
계	13	60	6	22	-	82	6	6.8	19	35	12	40	-	75	12	4.6

상대적으로 대규모경작을 하였던 양인·천민도 있었다. 1890년에 원내리의 巫夫 張稀道는 당시 50세의 나이로 并畝 13두락을 경작하였는데, 95년에는 무농으로 전락하였다. 같은 마을의 한량 梁學朱(27세)는 콩밭 2두락과 并畝 16두락을 지었는데, 95년에는 명단에 나타나지 않는다. 양안 마을의 한량 金永奎(43세)는 농우 1마리를 소유하고 체사 3칸과 행랑 2칸에 살면서 운현궁 소유의 병답 20두락을 지었는데, 95년에는 병답 24두락과 자작전 3두락으로 확대되었다. 용두의 과부 양소사는 49세의 나이로 체사 3칸과 행랑 5칸을 소유하고 주점을 경영하면서 자작답 8두락과 병답 9두락을 경작하였는데, 95년에는 병답 8두지로 축소되었다. 이로써 보면 1895년에는 평균 경작규모만 축소된 것이 아니고 대규모 경작자의 경작 규모도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작지의 경우 양반층만이 호당 평균 논 1두락과 밭 0.8두락을 경작하였고, 그 이하층에서는 자작지는 거의 없었다.

표 2-10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가옥 형태

단위: 호

	1890년				1895년			
	A	B	C	합 계	A	B	C	합 계
體舍行廊	4	-	-	4	3	-	-	3
體舍	1	-	-	1	-	-	-	-
草家行廊	-	-	-	-	-	-	-	-
草家草舍	2	-	1	3	6	1	2	9
戶舍草幕	-	-	5	5	-	-	1	1
挾家	-	-	-	-	5	-	1	6
합 계	7	-	6	13	14	1	4	19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과 농지경작 규모의 관계를 보면 <표 2-9>와 같다. 양반층의 경작 규모는 1890년의 호당 평균 10.5두락에서 95년에는 5.2두락으로 준 반면 천민층의 그것은 2.6두락에서 3.5두락으로 늘었다. 그러나 자소작지별로 보면, 천민층은 1890년이나 95년이나 자작지는 전무하였다. 반면, 1895년에 양반층 무농이 5호였는데, 천민층 무농은 1호로서 몰락 양반층의 경우 하층민의 경제상태보다 못하였다.

한편,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가옥 형태를 보면, <표 2-10>에서 보듯이 양반층의 경우 1890년에는 7호 중 5호가 기와집 혹은 행랑이 달린 기와집에 거주하였고 2호가 초가집에 거주하였으나 1895년에는 6호가 초가집, 5호는 挾家に 거주하였다. 천민층의 경우 1890년에는 1호가 초가집, 5호가 오막살이였으나 1895년에는 오막살이 거주자가 1호로 줄었다. 몰락 양반의 경우 천민층보다 못한 협가에 사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1890년대 토지면에는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노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구별이 존재하였으며, 그러나 구성비로 보면 80% 이상의 가호가 양반층으로 상승함으로써 신분제는 사실상 밑으로부터 해체되고 있었다. 또한 신분과 농지경작규모의 관계로 보면, 천민층의 경작규모가 양인층보다 클 정도로 양자의 구분은 모호해졌으며, 양반층의 경작규모가 여전히 천민층의 그것보다 컸다. 그러나 양민층과 천

민층 몇몇은 소작답이긴 하나 10-20두락을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1호는 주점을 경영하면서 자작답 8두락과 소작답 9두락을 경작하기도 하였다. 반면, 오미동의 경우에는 천민층 호수의 비율이 토지면 전체의 그것보다 높았으며, 1895년에는 천민층보다 열악하게 사는 양반층이 있었으나 오미동의 경우 신분제의 잔영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2. 1902년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

앞에서 보았듯이, 토지면의 경우 1894년의 갑오개혁에도 불구하고 1895년에도 신분구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류씨가에서 1902-11년에 작성한 「壬寅(1902년)春戶外雇丁春秋使役件」을 살펴보면, 이 때에도 오미동에는 비록 호칭과 표기상의 구분이지만 여전히 신분구별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오미동에는 류씨가의 가택 외에 그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16호, 서쪽으로 19호의 가옥이 있었는데, 이 자료는 이들 가옥의 순서대로 류씨가에서 임금을 주고 고용한 노동일수를 기록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들 가옥의 가호주에 대한 표기 방식을 보면 3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姓氏가 없이 戶名만 나오는 18호(無姓有戶名), 姓氏와 戶名으로 표기된 8호(有姓有戶名), 戶名이 없이 姓名으로 표기된 9호(無戶名有姓名)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구별은 이 시기 전후의 다른 문서에도 동일한데, 다만 이 자료에는 류씨가를 포함한 4호를 제외하고는 오미동의 전 가호가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어쨌든 이 이름 표기 방식을 다른 문서에 나타나는 본명과 대조하면, 無姓有戶名은 류씨 일족으로서 예전의 유학층 이상을 나타내며, 有姓有戶名은 타성인으로서 유학층 이상, 無戶名有姓名은 私奴·東伍 등의 천민 출신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가지 유형의 이름 표기 방식에 따라 1902년 오미동의 신분 구성을 정리한 것이 <표 2-11>이다. 표에서 無姓有戶名이 류씨 일족을 가리킨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無戶名有姓名으로 표기된 자들 중 최학봉과 서시종은 崔南來(남원에서 전입은 최씨라는 호칭), 徐晉來(진주에서 온 서씨라는 호

표 2-11 1902년 오미동 가구의 신분계층별 구성

		無姓有戶名		有姓有戶名		無戶名有姓名
		戶名	姓名	戶名	姓名	
東便 家戶	1戶	奴甲導	류양환			
	2戶	奴玉丹	류제곤			
	3戶	奴辛金	류제홍			
	4戶	奴万辰	류진환			
	5戶	小位丹	류민환			
	6戶					崔鶴鳳
	7戶			李奴小切	이덕만	
	8戶			李奴小辰	?	
	9戶					徐時宗
	10戶					朴石奉
	11戶			李奴卜甦	이인서	
	12戶	奴卜全	류필환			
	13戶	奴小南孫	류제범			
	14戶	奴南孫	류제천			
	15戶	奴占玉	류봉환			
	16戶	奴先禮	류인환			
	합계	10호		3호		3호
西便 家戶	1戶					金奉準
	2戶					朴命卜
	3戶					李斗
	4戶					徐蒙屈金
	5戶	奴老未	류제득			
	6戶					金玩石
	7戶	奴万興	류인구			
	8戶	奴次位丹	류문환			
	9戶			高奴元丹	?	
	10戶					李巡宗
	11戶			李奴先得	이홍익	
	12戶	奴万葉	류제혁			
	13戶			鄭奴尙每	정기헌	
	14戶	奴位丹	류제원			
	15戶			鄭奴環來	?	
	16戶	奴알望	류관동			
	17戶			朴奴晉來	?	
	18戶	奴千男	류제표			
	19戶	奴得才	류우석			
	합계	8호		5호		6호
총계	35호	18호		8호		9호

칭)라는 별칭이 있었지만 나머지 7호는 아무런 별칭 없이 시종 본성명으로 표기하였다. 이들 7호 중 이순중은 1895년 「가좌책」에 한량 신분으로 기

록되어 있으며, 박석봉·박명복·서몽굴금·김완석은 1895년 「가좌책」에 私奴 신분으로 기록되었던 朴也無金·朴堧文·金時羆·徐日尙의 자손이었다. 박석봉과 박명복은 형제로서 박돌문의 아들인데, 박석봉은 박야무금의 螟子가 되었으며, 서몽굴금은 서일상의 장남 서탁들의 아들이었고, 김완석은 김시들의 아들이었다. 이두·서몽굴금·박명복은 1899·1909·1932년에 각각 류씨가가의 머슴을 지내게 된다.

요컨대, 오미동에서는 1902년에도 의연히 이전의 출신 신분에 따라 호칭을 달리 하였으며, 이들은 또 류씨가의 머슴이나 소작농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차별과 궁핍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3. 오미동 가호의 경제적 계층 구성

오미동 전체 가구의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로는 1909년에 작성된 「隆熙三年四月五美洞新結冊」과 1911년에 작성된 「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束冊」이 있다. 전자는 1909년 음력 4월 7일 이장 류홍규 이름으로 작성된 오미동민의 결수 조사서로서, 오미동민이 경작하는 오미동 구역 내의 농지 목록이다. 여기에는 원결질과 가경질로 나누어 경작자별로 경작지의 자호·지목·庚子(1900년)改量結數·원결수·坪名 등이 적혀 있어 소유규모는 알 수 없지만 농가별 경작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 1911년 자료는 이와 대동소이한 양식으로 작성되었지만 전자와 달리 경작자별이 아니라 소유자별로 토지 목록을 적고 각 필지별 소작인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자료로는 소유규모별 및 경작규모별 농가 구성을 알 수 있다.

먼저, 1909년 자료를 통해 1909년 오미동의 경작규모별 호수 분포를 보면 <표 2-12>와 같다. 1909년 현재 총 35호의 가호 중 28호가 답 약 270두락, 25호가 밭 약 23두락, 합계 30호가 293두락의 오미동 소재 전답을 경작하여 논은 경작농가 호당 평균 약 10두락, 밭은 경작농가 호당 1두락,

표 2-12 오미동의 경작규모별 농가호수, 1909

단위: 호

	-1두락	1~5	5~10	10~20	20~30	30~40	50두락-	합계	무농	총계
논	-	14	8	2	-	3	1	28	7	35
밭	13	11	1	-	-	-	-	25	10	35
논밭	-	14	10	2	-	3	1	30	5	35

표 2-13 오미동 농가의 농지소유 실태, 1911

	면적(두락)			소유자 수			호당평균면적(두락)			무소유 농가(호)	총농가 (호)
	합계	동민	외지인	합계	동민	외지인	합계	동민	외지인		
대지	8.00	8.00	-	7	7	-	1.14	1.14	-	27	34
전	21.66	21.66	-	9	9	-	2.41	2.41	-	25	34
답	259.30	207.30	52.00	15	8	7	17.29	25.91	7.43	26	34
대전답	288.96	236.96	52.00	18	11	7	16.05	21.54	7.43	23	34

자료: 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粟冊(1911)

논밭 합계 경작농가 호당 10두락 정도를 경작하였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총 35호 중 논밭 합계 30두락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 4호(11.4%)가 전체 경작지의 57%를 경작하였으며, 경작지가 전무한 가구가 5호, 10두락 미만 경작자가 24호였다. 특히 밭 면적이 작아 밭을 가장 많이 경작하는 농가도 밭 5두락에 불과하였으며, 논은 경작하지 않고 밭만 1두락씩 경작하는 농가가 2호였다.

다음, 1911년 자료를 통해 오미동 농가의 농지 소유실태를 정리한 것이 <표 2-13>이다. 표에서 보듯이 총 34호 중 논을 소유한 가구는 8호, 밭을 소유한 가구는 9호, 대지를 소유한 가구는 7호였으며, 따라서 27호는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류씨가의 협호로 살았다. 25호는 밭이 없었고, 26호는 논을 소유하지 못하였으며, 23호는 대전답 모두 소유하지 못하였다. 오미동 농가의 농지는 총 18명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면적은 대지 8두락, 논 259.3두락, 밭 21.7두락, 합계 289두락이었으며, 이 중 외지인 7명이 논만 52두락을 소유하였다. 외지인 소유자의 거주지는 2인이 구례군 마산면, 2인이 구례읍이었으며, 운봉·순천군 거주자와 경성 운현궁에서 논

표 2-14 오미동의 농지소유규모별 호수, 1911

	단위:호								무농	총계
	-1두락	1~5	5~10	10~20	20~30	30~50	50두락-	합계		
논	-	2	3		1	1	1	8	26	34
밭	3	4	2	-	-	-	-	9	25	34
계	2	3	3	-	1	-	2	11	23	34
외지인	-	4	1	1	1	-	-	7		7

7두락·4두락과 4두락을 소유하였다. 가장 많은 논을 소유한 외지인의 소유면적은 논 20두락이었다.

오미동민의 농지 소유규모별 호수를 보면, <표 2-14>에서 보듯이 11호 중 8호가 10두락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였으며, 류제표(논 111.3두락, 밭 8.1두락 소유)와 류형업(논 48두락과 밭 5.4두락 소유) 등 50두락 이상을 소유한 2호가 오미동민이 경작하는 농지의 75.5%를 소유하였다.⁵ 1911년 현재 오미동의 농가유형별 호수와 이들이 소유 또는 경작하는 농지의 자소작 유형별 면적 분포를 보면 <표 2-15>와 같다. 이에 의하면, 무농 4호를 제외한 30호의 농가 중 순소작농이 19호(63.3%), 순자작농은 1호로서 경작 면적은 순소작농의 그것보다 작은 3두락이었으며, 자소작농이 5호(16.7%), 자작지주가 4호(13.3%)였다. 또한 자작지주 4호가 전체 경작지의 43.3%를 차지한 반면, 순소작농 19호의 경작면적은 15.0%였으며, 자소작농 5호의 경우 자작지는 호당 평균 2.5두락, 소작지는 호당 5.9두락으로, 이를 합하면 호당 평균 8.4두락을 경작하였다. 지주겸자작농 4호는 호당 평균 20.8두락을 소작 주고도 호당 평균 30두락을 경작하고 있었다.

농가유형별 경작규모별 농가 호수를 보면 <표 2-16>과 같다. 총 30호의 경작농가 중 76.7%가 전답 10두락 미만, 50%가 5두락 미만을 경작하였으

⁵ 여기의 소유 면적은 오미동 외의 지역에 소유하는 농지는 제외된 것으로서, 1914년 류형업의 토지신고서에 의하면 논 84두락과 밭 23두락, 합계 107두락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지 증언에 의하면, 류제표의 소유 농지는 류형업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니, 그 역시 오미동 외의 지역에 소유하는 농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표 2-15 오미동의 농가유형별 호수와 경지이용 형태, 1911

단위: 두락

농가유형	호수	소유	자작	임대	임차	경 작		
						면적	비율(%)	호당평균
자작·임대	4호	204.91	121.61	83.30	-	121.61	43.3	30.40
자작·임차·임대	1호	8.60	8.50	1.00	10.00	18.50	6.6	18.50
자작·임차	5호	12.45	12.45	-	29.70	42.15	15.0	8.43
임 차	19호	-	-	-	95.70	95.70	34.1	5.04
자 작	1호	3.00	3.00	-	-	3.00	1.1	3.00
무경지	4호	-	-	-	-	-	-	-
합 계	34호	228.96	145.56	83.40	135.40	280.96	100.0	9.37

주: 부제지주 6인 제외

표 2-16 오미동의 농가유형별·경작규모별 농가 호수, 1911

단위: 호

	1-5두락	5-10두락	10-15두락	15-20두락	20두락이상	합 계
자작·임대	1				3	4
자작·임차·임대				1		1
자작·임차	2	1	2			5
임 차	11	7	1			19
자 작	1					1
합 계	15	8	3	1	3	30

주: 무경지 가구 4호 제외

며, 지주점 자작농 4호 중 3호는 20두락 이상을 자작한 반면 1호(류제양의 동생 류제영)는 논 7두락과 밭 1.1두락을 소유하였는데, 그 중 밭 1두락만 자작하고 논 7두락은 소작을 주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순자작농 1호(류제양의 4남)의 자작면적은 논 3두락에 불과한 반면, 순소작농 중 1호(류씨의 奴 박석봉)는 논 10두락과 밭 2승지를 경작하였다. 15두락 이상 경작 농가는 류씨가 부자와 류제표 등 모두 류씨 일족으로서 자작지주였다.

1909년과 11년의 자료를 대비하여 1909~11년 기간의 경영규모별 계층 이동 상황을 보면 <표 2-17>과 같다. 1909년에 10두락 이상을 경작하였던 6호 중 류형업·류제표 등 오미동의 2대 지주는 경작 규모가 그대로였지만 나머지 4호는 모두 축소되었으며, 특히 소작농으로서 1909년에 각각 논 11두

표 2-17 오미동 농가의 경작규모별 계층 이동, 1909~11

단위: 호

		1911년								
		무경지	1-5	5-10	10-20	20-30	30-40	50-	소멸	합계
1909년	무경지	1	2						2	5
	1-5두락	1	8	3					2	14
	5-10두락		3	5	1				1	10
	10-20두락		1	1						2
	20-30두락									-
	30-40두락				2		1			3
	50두락-							1		1
	신 출	2	1	1		1				5
합 계	4	15	10	3	1	1	1	5		

락과 밭 2승지를 경작하였던 류내화·박석봉은 5두락과 6두락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1909년에 10두락 미만을 경작하였던 농가 중에서는 6호가 약간씩 규모를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신출농가, 특히 류제양의 2남이 농사에 복귀하면서 소작지를 회수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류인환은 1911년에 밭 5두락과 논 21두락을 소유하였는데, 이 중 논 16두락과 밭 2두락을 자작하고, 나머지 논 5두락과 밭 3두락을 소작주었던 것이다.

제 3 장

한말의 지방통치와 구례군의 향약조직 운영

1. 조선시대 지방통치방식과 향촌사회조직의 변화⁶

1.1. 조선시대 지방통치 방식의 변화

조선 시기 국가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군현제를 통해 지방을 통치하였으며, 이 구조는 1895년 갑오경장 때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종래 부·목·군·현으로 차등화되어 있던 명칭이 337개의 군으로 단일화됨으로써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의 군현제는 군현의 昇降, 향·소·부곡 등 특수 행정구역의 소멸 등 고려시대에 비해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조선초에서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현의 수령이 향촌을 다스리는 방식에서는 수령과 재지세력 간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조선 전기, 중기, 후기에 상당한 차이

⁶ 이 절은 김인걸, 1992, “한말 구례 지방의 사회조직과 그 운영,” 「한말일제하 농촌사회구조와 사회생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해준·김인걸, 1993,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및 향촌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가 있었다. 임기가 거의 2년을 넘지 않았던 군현의 수령들로서는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재지의 유력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방통제의 기초가 되는 향촌사회의 구조와 사회조직 및 그 구성원들의 성격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수령의 향촌지배 방식 또한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하 조선시기 향촌사회 관련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국가(수령)-사족-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향촌지배방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세기까지는 국가에서 전국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고, 面里制를 강화하면서 관권을 중심으로 향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군현제와 향·소·부곡 등 특수 행정구역제의 복합적 지방제도 하에서 鄕吏層을 통해 민을 파악·지배하였던 고려 시대의 지방통제방식은 고려 중·후기 이래 변화되어갔다.⁷ 그 변화는 속현 및 부곡제 지역에 대한 수탈의 가중과 향촌사회에 대한 중앙 대귀족의 침탈의 강화로 인해 초래되었고, 향리 등 재지 지배세력의 수탈 강화로 인해 민이 流亡 혹은 私民化되면서 국가의 수취기반이 약화됨으로써 심화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건국과 함께 집권 사대부층은 속현과 부곡제 지역을 정리하면서 군현제를 재편하고 外官制를 정비⁸하는 한편, 군현의 하부기구로서 面里制를 정비하여 향촌에 대한 관주도의 통제를 확립하였다.⁹ 이와 함께 고려시대에 향촌의 지배층이었던 향리층은 檢校職·添設職 등을 통해 官人化되거나 관인에 준하는 留鄕品官화한 土姓士族層과 그렇지 못한 土姓吏族層으로 분화되었다. 중앙관인화된 사족층은 고려후기의 事審官制度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에 京在所를 설치하고 지방에 留鄕所를 설치하였다.¹⁰ 유향소는 사림파와 훈구파 간의 세력 관계

⁷ 蔡雄錫, 1986, “高麗前期 社會構造와 本貫制,”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朴宗基, 1987, “高麗時代 村落의 機能과 構造,” 『震檀學報』64

⁸ 李樹健, 1971, “朝鮮初期 郡縣制整備에 대하여,” 『嶺南史學』1(『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에 재수록)

⁹ 朴鎮愚, 1988, “朝鮮初期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強化,” 『韓國史論』20

¹⁰ 지방 출신 중앙관인들이 출신 지역의 留鄕所를 통제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락사무를 위해 중앙에 설치한 기구로서 고려시기의 사심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였다. 11 이 과정에서 재지사족들은 향촌의 지배권을 장악하였으나 향리층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으며,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還穀 등 지방재정 운영과 부세행정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조선초의 이 같은 지방통치 방식의 변화는 고려말의 조방적인 休閒農法이 고려말-조선초에 집약적인 連作常耕農法으로 발전함으로써 자연호 단위의 노동력에 의한 농업경영이 가능해졌다는 농업기술상의 발전을 배경으로¹² 고려말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자연촌이 조선초에 里로 바뀌며¹³, 고려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군현 단위의 舉郡的 鄕村共同體인 香徒가 “이 자연촌의 성장이란 사회적 변화에 따라 麗末鮮初에 이르면 자연촌(里) 단위의 촌락공동체로 그 규모가 줄어드는 변화를 겪게”¹⁴ 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관권우위의 향촌통제 방식은 16세기 중후반 들어 관권의 우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향촌사회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사족들을 매개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6·17세기에 재지사족은 밖으로는 관권을 매개로 한 중앙의 집권세력과 대항하며, 안으로는 지주적 기반의 안정 강화를 꾀하며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당시까지 사족의 향촌지배에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향리층을 배제하고 하층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다. 이 때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물적 토대가 되고 있던 토지와 노비 소유의 월등한 우위¹⁵에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권력구조의

경제소에 관해서는 김용덕, 1979, “京在所論,” 『韓國學報』90; 이수건, 1989, 『조선시대지방행정사』 제5장 참조.

¹¹ 李泰鎮, 1972·73, “士林派의 留鄕所復立運動,” 『農檀學報』34·35(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에 재수록)

¹² 이태진, 1983, “고려말 조선초의 사회변화,” 『진단학보』55

¹³ 이우성, 1961, “麗代 百姓考,” 『歷史學報』14

¹⁴ 이태진, 1972, “醴泉 開心寺 石塔記의 분석-고려 전기 香徒의 一例-,” 『역사학보』 53·54 합집(『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재수록)

¹⁵ 재지사족은 선진농법을 바탕으로 ‘邑治’ 지역 외곽의 향촌을 개발하여 농장을 개설하거나 처가와 외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거주지로 집적하여 지주·전호 관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吏民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기구를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조정에서의 ‘朝權’ 또는 官權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鄉權’이 주목되고 있었는데, 이 향권은 관권으로부터 일정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것이 재지사족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이들이 군현 단위에서 향권을 장악하고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은 鄉案과 洞契였다. 향안은 군현 단위의 사족명단으로서 신분적 폐쇄성을 띤 사족결집체의 상징이었으며, 동계는 그들 거주지의 上下民을 아우르는 촌락지배조직이었다. 여기서 향안 참가자들은 자체 규약으로서 鄉規를 만들고 鄉會를 통해 一鄉支配를 실현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 내용이 鄉案入錄 규정과 鄉憲 및 鄉任의 선출에 관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吏任의 선출이라든가 吏民에 대한 통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향회를 통해 관철시키고 있었다.¹⁶ 한편 동계는 각 동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성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원의 존재형태에 따라 그 내용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지만, 그 기본 성격은 농민경영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상하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동내의 부세 및 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16, 17세기의 동계는 대체로 상하민을 아우르면서 상계와 하계의 구분을 두어 상계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관의 행정조직인 면리조직으로부터 일정한 독자성을 띠고 있었다.¹⁷

계를 확대시켜 나갔다. 16세기의 지주·전호제에 관해서는 이경식, 1977, “16세기 지주층의 동향,” 『역사교육』19; 김홍식, 1981, “봉건적 소농민경영의 성립,”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기본구조』, 박영사 참조.

¹⁶ 金龍德, 1978, 「鄉廳研究」, 한국연구원; 金仁杰, 1983, “朝鮮後期 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士族,” 『김철준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全炯澤, 1989, “17세기 潭陽의 鄉會와 鄉所,” 『韓國史研究』 64; 金炫榮, 1989,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 -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

¹⁷ 鄭震英, 1985, “16세기 安東地方의 洞契,” 『嶠南史學』 창간호; 朴景夏, 1987, “倭亂直後 鄉約에 관한 研究-高坪洞 洞契를 중심으로-,” 『中央史論』 5; 李海濬, 1988, “朝鮮後期 靈巖地方 洞契·洞約의 性格 -사족적 배경과 성립과정을 중심

이처럼 16세기 중엽 이후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관의 행정조직 외에 재지사족이 중심이 된 향촌 지배기구가 병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 시기 관인들이 지방적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향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이해만이 아니라 재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양자를 결합시키는 지배기구를 향촌사회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즉, 이 시기에 국가는 재지 지배층의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인정한 위에서 그것을 매개로 하여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6·17세기에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여 통제하던 수령의 향촌통제 방식은 18세기 이후 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지배구조가 동요되고 향촌 지배기구에 官權과 결합한 새로운 층이 참여하게 됨으로써¹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변화는 조선후기에 들어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에 기초하여 농민층 내부에서 부를 축적해 나갔던 부민층들이 대두되게 된 것¹⁹이라든가, 이양법의 전면적인 보급에 의해 농업의 중심이 한전농업에서 수전농업으로 옮겨짐에 따라 자소작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두레공동체가 성립 발전하고 있었던 사실²⁰ 등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지방정책도 크게 변모되고 있었다.

숙종대 이후 국가의 지방정책은 관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족들의 통제하에 있던 향권을 관의 통제하에 종속시키며 점차 사족들을 배제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으니, 지방통치 방식의 변화 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²¹ 첫째, 농민층 분화로 공동체적 질서가 이완되는 움직임에 대응

으로-, "震檀學報, 53·54합

¹⁸ 金仁杰, 1988,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韓國史論』19

¹⁹ 金容燮, 1970·1971, 『朝鮮後期農業史研究』I·II, 일조각

²⁰ 李泰鎮, 1989 "17·8세기 香徒조직의 分化와 두레 발생" 『震檀學報』67; 李海濬, 1990, "朝鮮後期 洞契洞約과 村落共同體組織의 性格," 『朝鮮後期 鄉約研究』, 향촌사회사연구회, 민음사

²¹ 한상권, 1993,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통치 연구와 자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2쪽.

하여 민을 공동체적 질서에 의해 재긴박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田稅에서 比總法, 軍役에서 軍總制, 還穀에서 還總制 등 군현 단위의 총액제 부세 운영 방식이 채택되었다. 둘째, 농민층 상층인 饒戶·富民들을 부세 운영의 새로운 담당자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숙종 37년(1711) ‘良役變通節目’의 반포에 따라 취해진 里定法の 실시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셋째, 국가는 향촌사회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자 하였다. 면리제의 본격적인 실시, 숙종대의 八道旬管堂上制, 영조대의 재지사족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수령권 강화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사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방통치 방식인 ‘사족지배체제’가 동요·해체되고, 면리제를 통한 직접적인 지배 방식인 ‘수령-吏·鄉 지배체제’가 정립되었다.

‘양역변통절목’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흔히 敎化로 표명되는 부분에서는 士大夫(사족양반)를 끌어들이면서, 그 밖에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부세문제 등은 중간 담당층에게 맡기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숙종조에는 아직 정부에서 재지사족의 입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고, 그같은 정부의 조치들을 이용하여 사족들이 자신들의 향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사족들의 결속의 근간이 되어 왔던 鄉案이 관권에 의해 파치되고 鄉會 조직이 와해되어 나가는 가운데 향회가 과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수령의 부세자문기관으로 격하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었다.²² 이같은 현상은 이제 향촌을 통제하는 데 사족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족의 鄉權이 官權을 강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됨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향촌사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고, 향회가 관의 부세 자문기관화 하는 것과 짝하여 면리는 하나의 수세단위화되어 나갔다. 18세기의 향약이 일반적으로 관의 주도 하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²² 金仁杰, 1983, 앞의 논문; 安秉旭, 1986, “朝鮮後期 自治와 抵抗組織으로서의 ‘鄉會’,”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17

가,²³ 18·19세기의 향약이 관에서 제공한 일정한 기금을 바탕으로 각종 부세문제 특히 잡역의 부담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조직되고 있었던 것²⁴ 등은 그같은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공동납을 강화하는 가운데, 신분제적인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차원으로까지 나가지는 못했고, 중세적 사회체제의 중요한 근간이고 당시 농민층의 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던 지주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층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층들이 각종의 방법을 동원하여 상급신분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여 신분제적 운영원리를 허구화시키는 기능을 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민들에게 그들이 저야 할 몫을 떠넘기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인들이 몰락하여 유리하게 되고 부세운영을 둘러싸고 각 신분층 간에 사회적 갈등이 현저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근본적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심화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각 사회세력 간의 대립이 지배기구 내에서 신규 지배세력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반면,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에 오게 되면 서리나 향입층이 관권에 저항하는 형태로 전화한다든가, 일반 민의 저항 형태가 유리 도망으로부터 관권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나 지주·부민층에 대한 공격의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²⁵ 19세기 중엽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란’은 그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²³ 韓相權, 1984, “16,17세기 鄉約의 機構와 性格,” 『震檀學報』 58; 朴景夏, 1990, “18세기 州縣鄉約의 性格,” 『朝鮮後期 鄉約研究』, 민음사

²⁴ 金仁杰, 1984, “朝鮮後期 鄉村統制策의 危機 -洞契의 性格變化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58; 李揆大, 1990, “19세기 洞契와 洞役,” 『朝鮮後期 鄉約研究』, 민음사

²⁵ 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1862년 농민항쟁」, 동녘; 李離和, 1984, “19세기 前期의 民亂研究,” 『韓國學報』 35; 李榮昊, 1988, “1862년 진주농민항쟁의 연구,” 『韓國史論』 19

그런데 이 시기에도 여전히 재지사족의 일부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향약 등의 기구를 통하여 상하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동시에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제 즉적 결속을 재강화하거나 횡적인 유대를 도모하기도 하였는데, 이같은 현상은 모두 그들의 향촌사회에서의 기반이 동요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후술하듯이, 1894년에 구례군에서 전라감사의 지시로 향약을 새롭게 조직하라고 했던 것도 이와 같은 향촌사회 내부의 역관계 및 사족과 농민층의 동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1.2. 한말 향약 실시의 배경

향약은 보통 北宋 陝西省 藍田縣의 呂大鈞 등 4형제에 의해 만들어진 ‘藍田呂氏鄉約’이 시초라고 한다. 이 향약의 전문은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朱子가 한층 상세히 규정한 ‘朱子增損呂氏鄉約’으로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바로 이 향약으로서, 전해진 시기는 자세치 않으나 「朱子大全」에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자학이 전래된 麗末鮮初에 소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통용되는 의미의 ‘향약’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개념 외에 鄉約이 ‘一鄉의 約束’ 혹은 ‘鄉里 간의 약속’으로 그 싹이 원시시대에 외적의 침입에 대한 공동방어의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²⁶ 주자의 향약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향약과 비슷한 향촌의 규약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 향약 보급에 선구적이었던 이퇴계, 이율곡 등은 향약이 ‘여씨향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 주나라 시대의 周禮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기원과 개념이 어땠든 향약은 기본적으로 士類·士族들 간의 약속이라는 점은 공통된다.²⁷

²⁶ 柳洪烈, 1938, “조선 향약의 성립,” 「진단학보」9권, 진단학회, 86쪽.

²⁷ 김필동, 1989, “조선전기 향약의 보급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의 사회와 문화」, 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선에서 향약의 실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시행된 것은 중종 12년(1517년) 이후였다. 그 이전에 향약이 실시되었던 사례가 있지만 이 때 함양 儒生 金仁範이 “여씨향약을 준행하여 풍속을 變改할 것”을 상소하자 이에 중종의 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상도 관찰사 金安國이 경상도 지역에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여씨향약의 諺解本을 보급하고 향약을 실시하였으며, 중종13년 4월에 서울로 돌아와 이 언해본을 팔도에 반포할 것을 奏請하자 중종이 이를 윤허함으로써 향약보급운동이 가속화되었다. 이리하여 경상·충청·전라도 등지에서 향약이 실시되었고, 서울에서 향약을 실시하는 데에는 논란이 야기되었으나 趙光祖를 위시한 사림파의 득세에 의해 중종14년에는 서울에서도 향약을 시행하도록 중종의 윤허가 내려졌다. 중종12년~14년에 활발히 추진되었던 향약보급운동은 그러나 중종14년 11월에 일어난 己卯土禍를 계기로 사림파의 몰락과 함께 실패로 끝났다. 이후 사림파가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중종 38년에 조정에서 향약 시행에 관한 논의가 있게 되었지만 향촌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수준에 그쳤다.

중종 12년 연간에 이처럼 향약보급운동이 급속도로 추진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김필동은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오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존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²⁸ 첫째, 14세기 이래 농업기술이 꾸준히 발전한 결과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었다. 둘째, 職田法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收租權이 소멸되는 동시에 지주제가 널리 전개되었다. 셋째, 貢物代納制가 점차 제도화되어가는 동시에 ‘放軍收布’가 유행하는 등 부역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넷째, 15세기 말엽부터 地方場市가 대두되는 등 상업이 발달하였다. 다섯째, 상업적 발달과 더불어 사치풍조가 만연하였다. 여섯째, ‘歷良爲賤’ 혹은 避役을 위한 投託 등으로 私賤人이 증가함으로써 稅收 감소와 노비신분에 대한 인신적 지배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²⁸ 김필동, 앞의 논문, 244~245쪽.

그 후 明宗 원년 3월에 이르러 향약의 보급과 시행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하였으나 명종의 미온적 태도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퇴계와 이율곡이 향약을 만드는 등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데 그쳤다. 조정에서 향약의 시행에 관해 논의하게 된 것은 선조 4년에 들어서였다. 이 때 훈구파가 몰락하고 사림파가 득세하였던 것이다. 선조는 처음에 그 시행을 반대하였으나 선조 6년 9월에 이를 윤허함으로써 향약은 다시 국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보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이율곡이 ‘先養民後教化’를 이유로 향약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하라는 제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국령에 의한 향약의 실시가 중지되었다. 이후에도 향약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으나 그것은 모두 재지사족들에 의해 거주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실시된 것들이었다.

재지사족들이 거주지에서 개별적으로 향약을 실시하였던 목적은 향촌사회에서 지주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하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재지사족들은 洞約(洞契)을 기반으로 하여 군현 단위에서는 鄉案 조직을 갖추고 鄉會를 통하여 吏民들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17세기 말, 18세기에 들어오면 향약은 수령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 수령 주도의 향약은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과거의 향회도 그 의미를 상실하고 수령의 부세자문기관화하게 되었다. 또한 사족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동 단위의 향약도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본래의 성격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²⁹ 정조 22년 「鄉禮合編」을 반포하고 향약의 기본 취지를 살려 각 군현에서 향약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 역시 당시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²⁹ 金容燮, 1985, “朝鮮後期の 大邱 夫仁洞洞約과 社會問題,” 『東方學誌』 46·47·48 합; 鄭震英, 1990, “18,19세기 士族의 村落支配와 그 解體過程-大邱 夫仁洞洞約의 紛爭을 중심으로-,” 『朝鮮後期鄉約研究』, 민음사

2. 1893년의 「鳳城鄉約」

2.1. 「鳳城鄉約」의 조직과 운용

제1장의 이용자료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오미동 류씨가에 소장되어 있는 구례군의 읍약 관련 자료는 1893~95년에 작성된 8종과 1935년에 작성된 1종의 문서 등이다. 이 중 1935년에 작성된 자료는 일제 당국이 한말 이래 소멸되었던 향약기구를 식민지 통치 목적으로 재조직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여타의 자료와는 작성시기와 목적이 다른 것이다. 이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구례군에서는 1893년에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향약 조직을 전라감사의 명에 의해 구례군 전체에 걸쳐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1893년에 관 주도로 향약을 재조직하게 된 목적은 문서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후술하듯이 토지면에서는 1812년에 현감 李億浦가 각 면에 내려준 軍丁查出錢 10량을 식리하여 원리금이 100량 가까이 되자 이를 바탕으로 1814년에 면약을 결성하였으며(土旨面約節目, 1814), 1890~92년 토지면 공전 지출 기록에 향회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1893년 이전에도 면회·향회 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90년의 향회가 1814년의 면약을 계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또한 이것들이 모두 부세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이전 시기의 향약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893년 당시까지 여전히 향촌사회에서 양반층들의 영향력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고종 30년(1893) 전라감사가 향약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것은 각 면에 본래 의미의 향약과는 다르나 행정보조 및 부세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面約·面會 등이 존재하고 있어 양반층의 향촌 내 영향력이 관철되고 있던 여건을 활용하여 향촌을 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갑오농민전쟁 직후 전라감사가 「鄉約章程」(1894년 12월)을 전주에서 간행하여 관할 각 관에 내림으로써 그 제

도적 보안을 꾀했던 것 역시 이 때 조직된 향약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 「향약장정」의 ‘鄉約事目’ 過失相規條에 누누히 동학의 무리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당시 향약의 실시가 농민군의 동향과 대립하는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893년 봉성향약의 조직은 당시 만들어졌던 「鳳城鄉約籍」의 서문(鳳城鄉約敍)에 “지금으로부터 향으로 하여금 그 리를 통솔케 하고 리는 향에 통제되도록 하며”라는 내용, 1893년 5월의 「鳳城鄉約籍」과 「洞約讀法」 및 1893년 6월의 「土旨面鄉約籍」 등의 선후 관계 등으로 보아 면리의 하부조직까지 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절목을 확인할 수 없고 위 책 자체가 이 후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³⁰ 그 다음 해에 관찰사의 이름으로 반포된 「鄉約章程」을 통해 그 윤곽을 검토하기로 한다.

봉성향약에는 班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하게 되어 있었고, 그에 참여하는 인원은 각기 몇량씩의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읍향약(도향약)의 기금 2량씩을 내고 약적에 참여한 자는 양반에 국한되어 있었다. 1893년 당시 이 향약(읍약)에 기재된 인물은 7개 면에서 309인이었는데, 이들의 신분층별 구성을 보면, <표 3-1>에서 보듯이 가입자의 95.5%가 유학층이었고, 나머지는 관직 역임자였다.

또한, 읍약 가입자 309인 중 대부분은 면향약에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면약에 가입하지 않은 자도 있었으며, 가입자의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모든 동에서 읍약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즉, 토지면의 경우 面鄉約에는 24개 동에서 164명이 각각 1량씩을 내고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상죽, 불당, 울치, 양안, 봉소, 송정, 내한, 외동, 중추 등 9개 동에서는 전혀 邑約籍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읍약에 참여했던 인물 57인(후에 68인) 가운데는 面約籍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 14인이

³⁰ 「鳳城鄉約籍」은 1893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鳳城鄉約敍’와 ‘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표면에 ‘交周冊’이란 표시가 되어 있어 이것이 이후 폐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폐기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외에 읍 단위에서 따로 작성된 ‘約籍’은 찾아볼 수 없다.

표 3-1 봉성향약 가입자의 신분별 구성, 1893

	幼學	五衛將	監役	參奉	司果	進士	監察	都正	郡守	計
용강면	23	-	-	-	-	-	-	-	-	23
방광면	41	1								42
마산면	81		2							83
토지면	55			1	1					57
간전면	53		1			1	1			56*
문척면	18					1				19
계사면	21							1	1	23
현내면	3					2			1	6
합 계	295	1	3	1	1	4	1	1	2	309

* 간전면의 읍약 가입자는 57명인데, 1명의 명단이 누락되었음.

자료: 鳳城鄉約籍(交周冊), 1893

었다. 이로 보아 봉성향약은 그 하부조직으로서 면·동향약을 갖고 있었지만 그 구성이 일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약의 임원 구성을 보면 <표 3-2>와 같다. 읍에는 都約正·副約正·直月을 두고, 면에는 約正·直月과 面掌을 두며, 리에는 里正과 里掌을 두게 되어 있었다. 都·副約正, 面約正, 里正은 가능한 교체하지 않으며, 직월·면장·이장은 돌아가면서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里掌을 제외한 각 임원은 지방관에게 망을 갖추어 보고하여 임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해 봄 가을 도·부약정이 향약정(면약정) 이하 각 임원들을 모아서 향교에서 강약한다”, “매월 초1일에 면약정이 각각 그 면에서 모여 강약한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읍약은 향약 임원들의 모임으로 상정되고 실제 상하민을 아우르는 향약은 면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초기 이 읍향약은 ‘月會’의 형식으로 매월 모였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面會(면약회)는 경비 등의 어려움 때문에 규정대로 매월 모이기가 어려웠던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다. 이 때 읍약회는 읍적에 참가한 양반들만의 모임이었다.

표 3-2 읍·면·동약의 임원

	임원명칭	인원	자 격	임 무
邑	都約正	1	朝官 혹은 유생으로 나 이 많고 덕행 있어 가장 존경받는 자	
	副約正	2	학식과 끈은 행실자	
	直 月	1	공정·화평·의리 있고 혼 들리지 않는 자	
面	約 正	1	조관 혹은 유생	면내 일반사무, 조세독촉·수납 주관
	直 月	1	상 동	면내 일반사무, 조세독촉·수납 거행
	面 掌	1	상민 중 근면자	
里	里 正	1	班民(없으면 常民)	里中 사무 주관
	里 掌	1	常民(없으면 班民)	里中 사무 거행

자료: 鄉約章程, 1894

‘봉성향약’은 읍약에 참가한 인원이 각각 2량씩을 내어 향약전(읍약전)으로 삼고, 그것을 8개면에 분배하여 식리한 대금을 갖고 향약의 운영기금으로 삼았다. 이 때 향약전은 읍약에서 관리하지 않고 면 단위에서 관리하였으며, 읍에서는 그것을 감독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 내 읍약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읍약전 운용 문서는 한 건도 없는 반면 토지면 읍약 가입자의 읍약전 운용에 관한 문서, 읍약전과 면약전의 이자를 각각 받아들인 기록(鄉約錢邑面條播殖都合冊, 1893.5; 土旨面約錢及邑約錢利條收拵冊, 1902-04) 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면에서 읍약전과 면약전을 식리하는 방식을 보면, 1893년의 경우 외면에 속하는 마을의 435호와 내면에 속하는 마을의 11호를 대상으로 토지면의 읍약전 98량 2전 8푼은 내·외면 합계 546호에 매호당 1전 8푼씩 각동의 호수에 따라 등에 배정하였고, 면약전 156량은 외면에 속하는 마을의 435호에 매호당 3전씩을 각 동의 호수에 따라 등에 배정하였다. 예컨대 오미동의 경우 18호에 대해 읍약전 3량 2전 4푼과 면약전 5량 4전, 합계 8량 6전 4푼이 배정되었으며, 그 이자율은 연 40%였다.

2.2. 1893년 「봉성향약」의 실시 배경

1893년에 전라감사가 각 군현에 향약을 실시하도록 하고, 1894년에 「향약장정」을 반포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1894년 중앙정부에 의해 시도된 「鄉會議案」과 「結戶錢捧納章程」이 주목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8세기 후반 이래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화하고 있었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갑오농민전쟁기 전주화약에 의해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시기에 정부가 기존의 향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제도 개혁에서 농민층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동시에 지방사회에서 개화파의 정치기반을 창출하려는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³¹ 이 때 향회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서 「結戶錢捧納章程」(조세금납화 조치, 조세제도 문란 시정이 그 내용)에서는 읍 단위에서 賦稅와 徵稅의 두 과정을 분리하여 부세는 수령이, 징세는 향원이 맡도록 하였다. 구례군에서 1895년에 수령이 징세를 독촉하는 데 각 면의 鄉員과 각 동의 里正·統首를 이용하였던 것(下帖吐旨面鄉員及各洞里正統首, 1895)은 지방사회에서 그같은 시도가 실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결국 향회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표는 징세기구의 개편, 즉 지방행정 실무자를 서리층에서 향반층으로 교체하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鄉班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민권을 인정하여 정치기반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일본 군국주의자들 및 지방 양반층과 연합하여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지의 양반층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 보아 1894년 12월 「향약장정」을 반포하고 향약 실시를 강조하였던 것은 향반층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조치는 위

³¹ 李相燦, 1989, “1894-5년 地方制度 개혁의 방향 -鄉會의 법제화 시도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67

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전부터 지방 통제를 위해 양반층을 이용하고 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894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행정, 특히 징세부분에서는 향회와 향원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³² 구례의 사례에서도 그 점이 확인된다.

3. 土旨面約과 土旨面の 운영

3.1. 1893년 이전의 土旨面約과 面會

1893년에 전라감사의 지시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계통조직으로서의 향약이 조직되기 이전에 토지면에는 이미 면약과 면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순조 12년(1812) 경 현감 李億甫가 軍丁查出錢 가운데 10량씩을 각 면에 분배하였는데, 토지면에서는 그 금액을 기본금으로 하여 “해마다 이자를 키우고 사용하지 않다가 3년만에 취합해보니 거의 100량을 헤아린즉” 이를 바탕으로 순조 14년(1814) ‘面約’을 새롭게 결성하였던 것이다(吐旨面約節目, ‘序’, 1814).

이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土旨面約節目」의 ‘節目’에 의하면, 都有司·有司·錢有司 등의 임원을 두고, 3월과 9월 15일에 회동하며, 불효·불공하여 윤리와 풍속을 해치는 자는 면 중에서 公議하여 관에 고하고 면에서 추방하는 등 권선징악의 활동과 오봉산 삼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헌으로 禁養監官을 삼고 도벌자는 면 중에서 다스리되 큰 일인 즉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서의 말미에는 面首 柳應漢과 都正·副正·掌議 등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약의 임원은 실제 이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814년에 조직된 면약에 관해서는 이외의 자료가 없어 더 이상 구체적인

³² 李相燦, 앞 논문 참조.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때의 면약에서는 “우리 임금(정조를 말함)께서 즉위 22년인 丁巳年(1797년)에 3대의 훌륭한 다스림에 더욱 힘쓰시고자 鄉飲禮條件과 農庶政繪書を 연이어 내리시니(“序”)”라고 하여 『鄉禮合編』의 繪旨를 따르는 것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권의 보조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고, 자체의 조직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상하민을 아울러 통제하는 데 한계를 갖는 것이었으며, 읍 단위에서까지 조직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토지면의 面櫃子 속에 있었던 문적 가운데 ‘嘉慶二十五年四月 日 補民廳節目’(1820) 외에 ‘壬戌十一月 面會救弊節目’(1862) ‘戊辰正月十七日 面洞用下定式節目’(1868) ‘戊辰七月 日 面壬司及面會厘正節目’(1868) ‘庚午八月 日 求禮縣弊瘼矯革節目’(1870) ‘光緒九年 癸未正月 求禮縣賦稅厘正節目’(1883) 등 부세문제와 읍면 단위의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³³으로 보아 면회·면약이 행정기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어찌 오늘의 면약이 뒷날에 향약이 아니 된다고 알 수 있겠는가” 혹은 “이제 우리가 면약을 이룬 효과가 다만 한 면에 그치겠는가(“序”)”라고 한 데서 면약의 상하 조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문적의 제목에서 보듯이 1862년에 토지면에는 면회가 존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전하는 「庚午八月 日 縣內面上 求禮縣弊瘼矯革節目」(고종 7, 1870)을 통해 그것 역시 관의 부세자문기구적 성격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 「절목」은 戶役, 還穀(社倉), 軍丁 및 기타 각종 雜役 운영의 개선과 각면 風憲(면임) 및 鄉所 임원(大同別監, 官廳別監)의 대우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軍役의 해결 방안이었다. 당시 구례에서는 納番軍 922명분을 전처럼 洞布로 내는 경우도 있고, 해당인의 이름을 파악하여 거두는 경우(名把)도 있었다. 그런데 이름을 직접 파악할 경우 村閭가 소란해져 그 액수를 충당하기 어려우니 民願에 따라 모두 洞布로 거두되, 面·洞에서

³³ 「土旨面約節目(抄)」附, ‘面櫃子 속에 현재 있는 文籍에서 참고할 만한 기록’

거둔 ‘鳩財錢’의 기금에다가 관에서 부족분으로 각 면에 보조한 50량을 합친 원금을 해당 洞里에 분배하여 그 이자로서 상납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³⁴ 그런데 이는 鳩財錢의 수합과 운용을 통해 일정하게 양반층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 절목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인물의 명단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鄉掌議·執綱, 鄉校齋首·掌議·色掌, 養士齋掌議·色掌, 尊位 등과 官任으로서 座首·補民都監·大同別監·戶長·吏房·査正色 등 총 24인이 그들이었다. 바로 이들이 향회의 중요 구성원들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³⁵

한편, 토지면에서는 고종 24년(1887) 이후 각 동에서 기금을 모아 面의 각종 경비에 충당하였는데(「土旨面新舊鳩財冊」敍, 1887), 1890~96년 토지면의 公錢支出記錄인 「土旨面各公錢排下都合冊」의 지출항목 중 정례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面首·訓長·尊位·面任·下有司 例下條 등이 있었으며, 1890~92년에 鄉會 비용 및 面會 당일의 지출액이 기록되어 있다. 1893년 면약이 결성되기 이전인 1890년에 면회 혹은 향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面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고, 1814년의 面約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814년에는 면약의 임원으로 面首·都正·副正·掌議 등을 두었음에 반해 1890년경의 면회는 면수·존위·면임·하유사 등이 주도하고 있었고, 1893년 관의 지시에 따라 새롭게 읍·면

³⁴ 이는 元戶에게만 지우던 戶役을 혁파하고 洞中에서 大中小戶로 등급을 나누어 요역을 균등히 담당토록 한 것이라든가, 환곡을 洞 단위로 분정하고 동임의 책임하에 동 내에서 대중소호로 나누어 均平 분배하되, 그 보관을 위해 나누어줄 때 1석당 1량씩을 받아 그것을 8개 면에 각 면당 23량 5전씩 5할의 이자로 분배하여 자금을 모으는 규정을 마련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에서 면과 동을 부세납부의 기본단위로 파악하고, 면 동에서는 공동납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야 했던 당시의 부세운영방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경우 鳩財錢의 마련과 고리대로 운영되는 기금의 분배와 收攥, 면·동 단위로 할당된 부세 액수의 充額 방법 등이 문제가 된다.

³⁵ 19세기의 鄉會에는 吏胥·鄉任 외에 각 면의 面任 등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895년 각 면에 鄉員이 두어진 이후에는 향원들도 그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다.

· 동 단위에 향약이 결성되었을 때 토지면에서는 “우리 面中에는 鄉約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實이 없는 지 오래(吐旨面鄉約籍, 1893)”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이 때의 면회 또는 면약의 기구가 주로 관치보조적인 성격으로 지속되어오고 있었지만, 향약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고종 29년(1892) 2월 새로 작성한 「吐旨面各樣排下節目」에는 매년 ‘大面會’를 봄가을에 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해 작성한 「吐旨面首尊位案冊」에서 面首는 종신직으로서 중인의 추대에 의해 결정하며 尊位를 선택하여 임무를 맡기고, 존위는 면의 대소사무를 집찰하며 面任으로 하여금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는데(‘序’), 면임은 면수와 존위가 면민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한 것(‘節目’)으로 보아 면 단위에서 마련했던 鳩財 원금과 면 단위의 재정 운영에 양반층이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1893년의 土旨面約

1893년에 전라감사가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계통조직으로서 봉성향약을 조직하도록 함에 따라 토지면약도 이 때 재조직되었다. 이 면약은 1902~1904년에 작성된 읍약전과 면약전의 운용에 관한 기록(吐旨面約錢及邑約錢利條收捧冊, 1902~1904)이라든가 류형업의 일기 『紀語』에 “조부께서 면약회에 가셨다(1904. 7. 25)”, “하단산에서 베풀어지는 鄉所에 참석(1906. 4. 25)”, “조부께서 단산정에서 열린 面會所에 가셨다(1907. 3. 10)”, “面會가 있어 죽천재에서 모였다고 한다(1909. 1. 12)” 등의 기록으로 보아 1909년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10년 2월 6일자 일기에 의하면, “면장 오한우가 군주사의 秘畵이라고 하면서 約錢과 前後 문서 및 장부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면 내 각 마을에 퍼져 있는 약전을 거두어 모아 義塾 창건 비용에 보태쓰기 위해 약장 김현규가 면내 각 마을에 통첩을 띄운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1910년 들어 각 마을에 배정되었던 약전을 모아 방장학숙 창건비용으로 기부하면서 면약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1893년의 토지면약은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며(「吐旨面鄉約籍」의 條目, 1893)”라고 하여 상하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입금 1량씩을 납부하고 입적한 양반들의 모임이었다. 가입금 1량이 쌀 4되 값(吐旨面中有本錢收利取殖冊, 1892~94)에 해당하는 크기였던 것도 그렇지만, 연 4회의 講信會日에는 “각기 深衣와 道服과 儒巾을 착용하고 참석(吐旨面鄉約籍의 條目, 1893)” 혹은 “본 面約會에 참가하는 인원은 道布와 儒巾을 갖추고 일찍 참가할 것(私通面中, 1893. 10)” 등의 규정이 그것을 말한다. 1893년 5월의 면약적 입적자를 정리한 <표 3-3>에서 보듯이 실제 면약 가입자들의 신분은 參奉 1인, 司果 1인, 衛將 1인, 幼學 161인 등 164명 모두가 유학 이상의 신분계층이었다.

면약의 임원으로는 都約正·副約正·直月·司貨 등을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³⁶ 이 중 司貨 2인은 “上中에 구애받지 말고 영리하고 일을 잘처리하며 민을 만한 자로 택하여 회의 경비를 관장케 할 것”이란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양반층이 아닌 자를 상정하였던 듯하다. 실제로는 約長 류제양, 副正 김현규, 色掌 장석훈, 司貨 임주현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吐旨面鄉約任司案, 1893. 6).

면약의 활동 내용을 보면, 1년에 4차례의 講信會와 강사회비를 마련하기 위한 면약전의 운용을 제외하면 약원이 四喪을 당했을 때의 賻儀,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우대, 善惡籍의 운용 등을 더 들 수 있는 정도여서 그 규정력이란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면약은 양반들만의 모임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 면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일반 동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면약전(면전)을 각 동 단위로 호수에 따라 매호당 3전씩 배정하여 그 이자로서 면약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면약의 구성원이 면 운용의 주체가 되고³⁷ 특히 그 가운데서 각 동의 25家作統의 別檢이 되어 각 동을 지휘감독하고 있

³⁶ 1894년의 「鄉約章程」에서는 면에 약정과 직월, 면장을 두도록 하고 있었다.

³⁷ 면의 운용을 주도하고 있던 것은 面首·尊位·面任(面掌)·下有司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면약의 구성원이었다.

표 3-3 동별 토지면약 가입자의 신분, 1893

	참봉	사과	위장	유학	합계
미동	1			8	9
환동				7	7
파도				27	27
하죽				18	18
중산				12	12
내죽				6	6
월곡				4	4
신단				2	2
단산				7	7
구만		1	1	6	8
상죽				4	4
중대				8	8
불당				8	8
울치				6	6
도산				4	4
용두				8	8
양안				3	3
봉소				1	1
원내				3	3
송정				2	2
내한				5	5
외한				3	3
외동				4	4
중추				5	5
합계	1	1	1	161	164

자료: 吐旨面面郷約人名錢數成冊, 1893. 5

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25家別檢은 또한 約中에서 勸善糾過의 임무를 맡으니 매달 한 차례 보름에 洞約會를 열어 그 선악을 논하며, 중대한 문제는 約所에 이야기하고 관가에 보고하여 이로써 권징할 것” 혹은 “約員과 25家作統 중에 만약 본분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을 능멸하는 자가 있거든 먼저 해당 別檢이 다스리고, 다음에는 約所에 보고하여 다스리며, 다음에는 都郷約所에 보고하여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8개面の 약소에서 돌아가며

다스린 뒤 도약소로부터 관가에 보고하여 법률로 다스리게 할 것”(「吐旨面鄉約籍」, 1893)이란 규정에서 보듯이 그것은 관의 행정조직과 긴밀히 관련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면약의 재원은 면약 가입자들이 각각 1량씩 낸 기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향약전의 운용에 관해서는 1893년 이후의 자료들에서 보인다. 「鄉約錢邑面條播殖都合冊」에 의하면 1893년에 토지면약에서는 읍약전 98량 2전 8푼을 내면과 외면의 546호에 호당 1전 8푼씩, 면약전 156량을 외면의 435호에 호당 3전씩 호수에 따라 각 동에 배정하였다. 예를 들면, 오미동의 경우 18호에 대해 읍약전 3량 2전 4푼(18호×1전 8푼)과 면약전 5량 4전(18호×3전)이 배정되어 모두 4할의 비율로 이식되었다.

이처럼 각 동에 배정하여 식리한 액수를 제외한 약전의 지출비목을 보면, 연 4회의 四孟月 강신회 때의 비용과 善籍者의 포상, 면내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문안 비용 등으로서, 지출내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액수도 미미하다. 따라서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향약의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3. 토지면의 행정과 재정 운영

토지면에서는 1812년 이래 면수·존위·면임 등이 중심이 되어 관에서 내려준 기금을 식리하여 이로써 면약을 결성하고 운영해 오다가 중간에 약간의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뒤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鳩財有司 등을 두어 기금을 마련한 바탕 위에서 1887년 다시 각 동에서 기금을 모아 면의 경비로 사용해오고 있었다.(「吐旨面新舊鳩財冊」 서문, 1887). 이는 토지면의 양반층들이 면에 할당된 부세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³⁸

1892년 2월 다시 정한 「吐旨面各樣排下節目」은 같은 때 작성된 「吐旨

³⁸ 양반층들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은 곳에서는 ‘洞中錢’ 등으로 鳩財錢을 충당하고 있었다(「吐旨面新執鳩財冊」).

面首尊位案冊」과 더불어 향약 실시 이전 토지면의 행정 및 재정운영 구조를 보여준다. 「면수존위안책」은 면수-존위-면임으로 이어지는 면의 행정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각양배하절목」은 면의 재정운영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衆人에 의해 추대되는 면수(종신직)가 존위와 면임을 결정하는 데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 면수와 존위에 의해 선정된 면임이 실무를 관장하지만 존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매년 3월과 9월의 大面會를 통해 면 운영에 관한 제반사를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면수·훈장·존위·면임·하유사 등의 예하전과 면전의 이자 운용 등 기금에 관한 내용, 토지면에 할당된 각종 부세의 납부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다. 면전은 각 동에 할당되고 있었는데, 그 운영의 책임은 洞首와 頭民이 맡고 있었다.

감사와 수령은 면동 단위에서의 위와 같은 부세운영 체계를 이용하여 향촌을 통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土旨面中有本錢收利取殖冊(1892~95)」의 1893년 기록에 “위의 돈은 이미 本錢을 불린 것이니 해마다 불려나가고, 또 查徵錢·面利錢·查出錢을 거둠에 따라 面中에는 해마다의 이자를 거두는 조항이 있으니 본전 위에 본을 더한다. 거두고 늘어남을 기다려 그 재물을 펴서 쓸 수가 있을 것이니, 이로써 첫째는 面約의 의례를 돕고 또 面稅를 보충한다. 約中으로부터 잠시 맡아 관리하고 그 장부를 기록함”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당시 면약이 토지면의 행정운영체계와 구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890~96년의 토지면 공전지출명세서인 「吐旨面各公錢排下都合冊」에는 면수·존위·훈장·면임 예하조 외에 ‘면회’, ‘향회’에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면약이 토지면의 재정 운영과 관련을 갖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면의 실제 운용이 면약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면에서 관장하는 面錢의 내용은 크게 3가지였는데, 鳩財 등을 통해 확보한 面錢과 軍丁查出을 통해 확보한 查徵錢·查出錢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모두는 각 동 단위로 분급되어 일반적으로 5할의 이자를 거두도록

되어 있었다. 면전을 분배하고 이자를 거두는 책임은 洞首와 頭民에게 있었는데, 이들은 면약에 들어간 경우도 상당수 보이지만 모두 면약적에 올라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면에서 지출했던 면전의 지출 내역은 첫째 구재한 재화를 이용한 戶布 등의 납부, 둘째 각종 雜稅, 셋째 면에서 사용하거나 면 단위에서 감당해야 할 각종 例下錢·例賻錢 등으로 구분된다. 면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有本이라 하여 구체적인 명목의 돈을 실제적으로 각 동에 분정하여 파악한 뒤에 2할 내지 5할의 이자를 거두거나, 명목상으로 本錢을 분정하여 그 이자를 거두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有本이 있는 경우는 구재전의 일부와 사징전 등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면전 운영의 주체인 面中에서는 결국 면전의 내용을 有本이건 無本이건 각 동의 호수에 따라 분정하여 받아내고 이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면의 공전은 일정한 지출 내역들을 열거하고 그 해의 호총을 계산하여 매 호마다 일정한 양의 액수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면전을 부담하기 위하여 1892년부터는 사출전과 사징전의 이자를 立本하여 쌀로 바꾸어 각 마을에 분정파식하고 그 이자도 다음 해에 본으로 쌓아가며 이식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공동 구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동부담의 의의를 살리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면을 통하여 부담하는 대부분의 공전은 각 동에 호총을 통해 분배되고 그 부담을 결정하는 방법은 동에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면의 운영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광무 6년(1902) 토지면에서 새로이 松契를 결성하면서 面會條約을 다시 重修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吐旨面 約正副正書目」(壬寅 1902년 4월 일)에는 約會冊子와 松契冊을 성첩하였으니 傳令 1장을 成給해 줄 것을 관에 요청한 사실이 보인다. 동 서목에는 약정 류제양, 부정 이규찬·임노경, 직월 최명구, 사화 임주현의 성명이 보이고, 그 말미에는 첩을 만들어 보내라는 관의 데김(題辭)이 있다. 이로 보아 토지면의 송계는 '面中'의 '공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서 관의 승인하에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당시의 송계는 각 동에

소재해 있는 산판에서 일정한 돈을 거두고 봄가를 벌목할 때 매매한 소나무 값 가운데 십일조를 거두어 기금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돈은 대체로 면임인 面掌이 거두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面執綱이 거두는 경우도 있었다. 각 동 단위로 동수의 성명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돈을 거두어내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洞首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또한 송계의 유사는 면집장이 맡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당시의 면약(면회)이 면의 행정기구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¹

4. 五美洞約과 五美洞의 운영

4.1. 1893년의 五美洞約

오미동약 역시 고종 30년(1893) 「봉성향약」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동약에는 오미동의 36가와 하죽의 14家 등 총 50家가 25家作統에 따라 2개의 統에 편제되어 있었고, 임원으로는 2개의 統을 감독하게 되어 있던 別檢 2인(류제원, 박규진)과 각 동의 洞首 등이 있었다. 25가작통은 18

³⁹ 「下帖吐旨面中及松有司各洞洞首」(1902년 임인 4월 28일)

이 자료는 1902년 4월 28일 구례군수가 吐旨面中(특히 송계유사)과 각동 동수에게 내린 칙문으로서, 토지면의 공의에 따라 禁松節目을 만들어 보고해 왔으므로 그를 인정하고 면에 다시 그것을 돌려보내니 有司와 洞首가 중심이 되어 잘 운영할 것을 지시한 문서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토지면에는 당시 금송절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자료상 확인되지는 않는다. 문서말미에 구례군수의 도장이 찍혀 있다.

⁴⁰ 「吐旨面內所在 松田及主管人姓名冊」(광무 6년 임인; 1902년 3월 20일)

⁴¹ 「私通 面中」(1903년 계묘 2월 14일)은 송계의 局錢條, 犯伐條, (소나무)賣買十一條를 완납하도록 독촉하는 통문이다. 통문을 발송한 이는 '上有司'이다. 송계설립시 송전 1판마다 3전, 벌목시 소나무 매매대금 중 십일조를 내어 송계의 본전으로 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 등에서 원 '절목'내용의 일부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통문의 말미에 “올 봄에 三大面이 모이는 자리에서 날날이 와서 내어 전처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면 천만다행”이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 송계가 인근의 면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96년 10월에 10가작통, 11월에 5가작통으로 바뀌는데, 이는 이 해 11월 11일에 매석당 2량의 예로 均排하였던 ‘本還’과 겨울에 새로 부과되기 시작한 ‘社倉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美洞各錢穀可放并記冊, 1893~1900), 이 시기에도 여전히 환곡 등 각종 부세가 동 단위로 납부되었던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⁴²

오미동약의 가입자격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 동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別檢이 一洞에 알려져 상하노소가 의관을 바로 갖추고 洞廳에 모이게 한다. (중략) 상하를 구별하여 동서의 자리를 나누고 서로 마주보고 차례로 서서 먼저 상읍례를 한 뒤, 음성 좋은 사람을 뽑아 독법을 眞文과 諺文으로 읽게 하여 다 들은 후에 또 서로 읊하고 해산한다”, “洞會에 모두 모일 때 가난하여 의관이 없는 자의 경우 몸을 단정히 하고 해당 위치에 서있는 것도 무방하다” 등의 조목(「洞約讀法」, 1893년 5월 일)이 그것을 말한다. 실제 오미동약의 가입자 50가 중에는 박야무, 김시돌, 서일상, 박돌문, 이순중 등 私奴 혹은 束伍 등 천민 신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약에는 별도의 조직이 없이 별검을 통하여 면약에서 동약을 통제하였다. 같은 조목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있거든 별검이 그 사실을 향약장에게 보고하여 善籍에 기록하였다가 面會를 하는 날에 그를 맞아 상좌에 앉히고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며 관가에 알리고 營門에 보고하여 포상케 한다”고 한 것은 약적이면 단위에 마련되고 동에는 없었음을 보여준다. 동약의 작목이 따로 있지 않은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동약의 중심 내용은 인리 친척간의 화목, 근실한 부세납부, 상하 신분질서의 존중, 동내 상호부조 등 기존의 향약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

⁴² 1896년 4월 2일 오미동에서 ‘洞米’를 均殖하는데 각각 5호씩을 1주비로 하여 주비당 분급하고 있었던 것(24호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1주비는 4호)이라든가, 1898년 3월 27일 社還米를 분급하는데 30호를 1통주비부터 6통주비로 나누고 각 통주비(5명)를 대상으로 하여 분급하고 있었던 것 등이 그같은 사정을 보여준다(「美洞各錢穀可放并記冊」). 그러나 그같은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었다. 또한 앞에서 면약전 운용의 예로서 오미동의 18호에 대해 읍약전은 매호당 1전 8푼씩으로 3량 2전 4푼, 면약전은 매호당 3전씩으로 5량 4전을 배정하였음을 보았는데, 오미동에서는 21호에 대해 읍약전은 1전 5푼 혹은 1전 6푼씩, 면약전은 2전 5푼 혹은 2전 6푼씩 배정하여 면약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배정하였다. 이 후 동약의 내용은 喪葬時의 賻助에 국한되고 그 규제를 위한 벌칙도 벌금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있었으나, 동약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어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4.2. 五美洞의 운영

류씨가 소장 자료 중 오미동과 관련된 자료 역시 부세운영이 그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洞의 財政運營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시기 오미동은 공동납세단위로 기능하였다. 즉 오미동의 주된 지출사항으로는 洞際⁴³·洞會⁴⁴·賻儀·농업노동(제초·揚蝗)과 기타 작업에서의 인력고용 등 마을 일도 있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戶布·戶斂錢이라고 불리웠던 戶稅와 鳩財錢·補民錢 등의 각양 공전, 즉 잡세에 대한 동 전체의 대응이었던 것이다. 1880년 이래 오미동에 배정되어 그 이자를 동에서 담당해야 할 것만을 적기하더라도 鳩財錢, 補民錢, 查徵錢, 騎牌錢, 官惠錢(구폐전), 營砲(射)錢, 燒木錢, 萬馬(關)錢, 興學錢, 靑大竹錢, 面錢, 木物錢, 場稅錢, 藁艸代錢, 邑砲射錢, 御史查徵錢, (陞伍資裝錢, 楮本錢) 등 그 명목이 무려 16(18)가지나 되었다. 여기에 전래되어온 ‘本還’, 1894년 6월에 부과된 ‘錢還’, 1896년 4월에 추가된 ‘洞米’, 같은 해 겨울 새로 부과된 ‘社倉還’ 등을 포함하면 그 종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각종 부담을 이 시기에는 상민만이 지는 것이 아니었고, 양반들도 말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洞米·洞租·洞番 등을 마련하여 그에 대응하였다. 그 외에 오미동의 錢穀(公錢) 운영에 宗租와 齋租 등 류씨 종중

⁴³ 『美洞事目冊』, ‘13량 1전 9푼 丁酉 10월 보름 洞際下記’(1897), ‘14량 4전 6푼 洞際下記’(1901), ‘洞米收捧記’(1909)

⁴⁴ 『美洞事目冊』, 丁酉年(1897) ‘兩次洞會下記’

의 재산이 포함되고 있었는데, 이는 오미동 구성원의 주류가 류씨 일족이었으며, 따라서 오미동에 부과되었던 각종 부세의 부담자가 류씨 일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동 단위로 부과된 각종 부세의 납부를 비록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班常이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미동에서는 이러한 戶稅와 雜稅에 대해 洞米·洞租·洞錢 등 동의 공동재산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각 부세에 해당하는 有無本錢을 식리를 통해 충당하거나 각 호에 일정액수를 배당·염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후자가 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는 듯하다. 洞米·洞租의 播殖과 호세·잡세의 排斂 방법은 마을의 각호에 그대로 할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마을 전호(20~30호)를 대상으로 5호·10호 단위로 주비를 지어 동일한 액수를 배당하거나, 1·2·3·4등 및 無農으로 경제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차등있게 배당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호세가 동에 부과될 때는 무농층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 과정에서 1·2·3·4등 및 무농으로 나누어 납세액이 배정되고 있어 無農層도 납부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게 된다. 주비짓기와 등급으로 나누는 방법을 병용하여 1·2·3·4등 및 무농으로 가호를 분류한 다음 등급별 가호를 고루 섞어 주비로 묶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동네 각호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면서 배렴·식리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제반 재정운영과 구별되는 범주로는 社還米의 운영이 있었다. 원래 오미동에는 사환 이전에 本還·錢還 등 환곡으로 이해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고, 오미동의 사환미는 1896년에 이어서 추출·마련되고 있었다. 1896년 「社還條例」에서 마련한 고리대화한 환곡을 폐지하고, 면 단위로 매석당 미 5승씩의 저리의 사환제를 운영한다는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행 초기의 사환제도는 본환·전환뿐 아니라 洞米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즉 동미에서도 사환미가 마련되고 있었으며, 社米부족분 18두를 동미에서 끌어서 충당하기도 하였고, 社首가 洞米를 운

영하고도 있었던 것이다. 사환미는 이후 주비짓기를 이용하여 분급하거나 1·2·3·4등 및 무농으로 동민을 나누어 분급하고 있어, 형식상 호세·잡세·동미의 배령·식리 방법과 동일하였다. 즉 환곡의 고리대적 성격을 없애고, 흉년과 평상시의 빈민에 대한 진대만으로 기능을 한정시킨다는 원칙과는 달리 종래의 환곡처럼 전가호(약 30호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빈민에 대한 진대를 위주로 운영될 수 없었고, 오히려 대상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분급량이 결정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1893년~1904년의 재정운영에서 오미동이 공동납세 단위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환미 제도의 운영에서는 일단 종래의 고리대적 폐단은 극복되었던 듯하나 빈민진대의 목적과는 달리 호세·잡세·식리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洞際’라든가 공동노동 등과 같은 공동체적인 측면이다. 동제에 관한 기록은 1898년에 작성된 「美洞事目冊」에 처음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 전해인 정유년 10월 보름의 ‘洞際下記’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오미동에는 동약이라든가 부세운영 등과는 별도로 공동노동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업협동·도로수선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농민 자신에 의한 것이나 전래의 공동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당시 洞役(이 경우는 도로 수선)은 금전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共同除草 등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규제자는 농민 자신이라기 보다는 마을의 유력층이었다. 洞會에서의 회계를 里長인 류계세·류계천 등이 담당하고 있다거나, 공동노동시 농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징·광금·나팔·북 등의 악기가 운조루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제 4 장

각종 계 조직의 운영 실태

1. 文化柳氏 宗中契의 운영 실태

1.1. 문화류씨 증중계의 연혁

文化柳氏 宗中契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187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치는 여러 문서들이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관련 자료로는 1870년에 追述하고 1878년 10월에 重修한 「文化柳氏大宗契案」, 1870년에 처음 작성하고 1878년 11월에 重修한 「文化柳氏次宗契案」, 1887년 10월에 운조루의 주인이었던 柳濟陽이 중심이 되어 다시 결성한 「文化柳氏宗契案冊」, 1913년 10월 30일에 오미동중계와 죽천중계를 합쳐 조직한 五美文化柳氏大宗契의 「文化柳氏契案」, 이와 별도로 같은 해 11월 7일 운조루 창건주 三水公 柳爾周의 입양자 術浩(德浩)派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결성된 중계의 「文化柳氏重本券正案」, 1924년 10월에 조직하여 1925년 11월 12일에 五美洞重本券·竹川宗契·高亭派宗契·甲子冬(1924)대중계 등 4종의 중계를 合契한 文化柳氏大同契의 「五美文化柳氏大宗契案」, 그리고 이 대동계의

기초자료의 성격을 가진 「五美文化柳氏大同契」 등 7종이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문화류씨 종중계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래 대구에 살던 류씨가 일족이 오미동을 중심으로 구례 지역에 이주한 것은 류씨가 오미동 입향조 柳爾甯가 현재의 운조루를 완공한 1776년 이후였다. 이 때 구례 지역에 이주한 일족은 몇 호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이곳(오미동)에 살고, 文化를 본관으로 하는 柳氏는 거의가 다……參判公(諱 榮三), 參議公(諱 亨三) 형제의 자손들(文化柳氏次宗契案序, 1878)”이라고 하였다. 류씨가 일족이 오미동과 인근 마을에 이주한 이래 종계가 있었는데, 그 계안 등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文化柳氏大宗契案」의 첫 머리에 ‘庚午(1870)春追述 戊寅(1878)冬重修’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 문서의 節目 중에 ‘舊案의 宗員은 아래에 다시 기록한다. 그러나 문서가 유실되어 租를 각기 몇 두씩 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그 누락된 부분은 懸錄하고 다시는 말을 꺼내지 말 것’이라든가, ‘전곡의 이자는 옛날에는 4할로서 하였지만 이제는 2할로서 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종계는 종원들이 租를 내어 기금을 삼고 이를 4할의 이자로서 운영하였으며, 座目(舊案) 및 계의 운영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유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처럼 종계의 문서가 유실되는 등 구래의 종계가 유명무실해지자 1870년에 이를 계승한 ‘대종계’가 재건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차종계’가 새로 결성되었다. 이 두 종계 중 후자는 전자의 ‘대종계’가 존재하므로 ‘차종계’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전자의 계안은 ‘追述’이라 하고, 후자의 계안은 ‘始述’이라고 명기하여 두 종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두 종계의 계안은 모두 1878년에 重修되었는데, 이 때 두 계안의 序는 모두 류제양이 지은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두 종계 중 ‘대종계’의 계원은 24명, ‘차종계’의 계원은 15명이었는데, 차종계의 계원 15명 중 12명의 이름이 대종계의 계원명단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차종계의 계원으로만 등재된 3명 중 2명은 대종계원의 아들 이름이었다. 차종계원 15명은 곧 대종계원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두 종계의 절목을 대비하면, 차종계안의 “각 계원이 비 3두나 4두를 내어 합계 2석 12두가 되게 할 것”이란 조목, 대종계안에서는

“참의공의 제수전”만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차종계안에서는 “참판공 양위와 참의공 양위의 제수전”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거의 동일하였다. 이로 보면, 대종계가 있는데도 차종계를 따로 만든 이유는 류제양의 증조부 德浩의 生祖父인 참의공의 제수 외에 養祖父인 참판공의 제수전을 마련키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③ 1887년에 다시 문화류씨 종계가 결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종계의 재산이 탕진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류제양이 직접 쓴 「五美洞閭史(1908)」에 의하면, “지난 庚辰年(1880년)에 錦山이 京債를 갚기 위해 종중 전답과 錢租를 탕진해버렸다. 논 12두락은 앞 들에 있는 것이고, 밭 4두락은 마산면 玉只坪에 있는 것이며, 돈 100여냥과 租 40여석(매석당 1냥 2전)이 그것이다. 그 후 壬寅年(1902년)에는 빚을 갚기 위해 長市坪에 있는 종중답 2두락과 瓦埜畚 2두락을 팔았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문화류씨 종중계의 종중 재산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는데, 이를 1880년에 탕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錦山이나 京債에 관해서는 자료가 전무하여 더 이상 알 수 없다. 또한, 「文化柳氏宗契案冊(1887)」의 敍에 “지금 종중에 계를 만드는 뜻은 단지 利殖만을 취하여 이익을 보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하고, 마땅히 써야 할 바를 써서 조상을 위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에 있을 것이다”고 한 것이나, 계원 각자에게 租 5두 6승 혹은 3두 6승씩을 내게 한 것도 종중계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리하여 1887년에 종중계를 다시 결성하면서 31명의 계원으로써 종중계가 재결성되었다. 1887년 결성 당시 계원들의 연령을 보면 가장 연로한 류용선이 60세(1827년생), 가장 나이 어린 柳仁驥와 柳星文이 6세(1881년생)였는데, 이 좌목에는 계원별로 성명·字·생년·契米 외에 宅號가 병기되어 있다. 계의 가입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였기 때문이다. 이때 종중계의 가입 대상은 참의공과 참판공의 자손으로서, 31가 중 5가는 불참하였는데, 이 중 2가는 1892년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④ 1913년 10월에는 죽천종계와 오미동종계가 병합하여 새로 ‘五美文化

柳氏大宗中을 이루면서 「文化柳氏契案」이 만들어진 한편, 바로 다음달 초에는 그와 별도로 류형업이 중심이 된 ‘重本券案’이 만들어졌다. 전자의 계원 명단에는 류제양이나 그의 장손 류형업은 들어 있지 않으며, 오미동과 죽천에 거주하는 류씨가 일족이 망라된 총 22명의 계원 중에 罃字 돌림의 항렬 이하는 보이지 않는다. 류제양의 동생 류제영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류제양-류형업으로 이어지는 운조루 류씨가 제외되어 있는 셈이다. ‘중본권’의 가입 대상은 류제양이 쓴 ‘重本券序’에 “문중 가운데 媵服을 입는 범위 안에 드는 친척”으로서, 류형업과 그의 자녀들을 위시하여 그의 숙부 4인과 자녀, 5촌 당숙 10명과 그들의 자녀, 7촌 족속 2인과 그들의 자녀 등 모두 류형업의 5대조 柳德浩의 자손에 한정되었다. 이 중 외지에 살고 있던 당숙 4인은 명단만 적혀 있고 그 자녀들의 성명이나 契租 납부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이들은 계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류씨계안’의 경우 계원 각자가 벼 1두와 돈 1전씩을 내면 되었는데, ‘중본권안’의 경우 계원 각자가 벼 1두와 돈 1전씩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아들을 낳았을 때 벼 1두와 돈 1전, 딸을 낳았을 때 벼 반말과 돈 5푼씩을 내도록 하였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중본권’의 결성 목적이 義庄(宗畵)을 설치하고 書院(家塾, 書齋)을 세우는 데 있었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⑤ 1924년에 위 두 종계의 구성원을 합쳐 대동계를 만들었는데, 1925년에는 고정파종계까지 합하여 오미동중본권·죽천종계·고정파종계·1924년의 대동계 등 4가지의 종계가 합해져서 명실상부한 ‘오미문화류씨대동계’로 합쳐지게 되었다. 명단에는 52명의 계원이 항렬과 연령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급은 계원 각자가 荒租 1두와 돈 10전씩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1924년과 25년에 52명 모두 계급을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합된 錢穀은 4할의 이율로 계원과 비계원을 가리지 않고 대부되었다.

1.2. 문화류씨 종중계의 구성과 조직

오미동 문화류씨 종중계의 구성과 조직에 대해서는 각 宗契案의 庶目과 節

目を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먼저 각 종계안에 나타난 계원의 수를 보면, 1870년 대종계안은 24명, 차종계안은 15명, 1887년 종계안은 31명, 1913년 문화류씨계안은 22명, 증본권안은 계원의 자녀와 계금을 납부하지 않은 4인을 제외하고 14명, 1925년 대종계안은 51명이었다. 계원의 수는 1차적으로 종중계의 포괄 범위와 종원의 수에 좌우되는 것으로, 가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예컨대, 1887년 종계안의 경우 31가 중 5가가 처음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 중 2가가 5년이 지난 1892년에 추가로 가입한 데 반해 3가는 참가하지 않았다. 종원이라 하더라도 종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종계는 가능한 한 종계의 가입 대상이 되는 종원 모두를 종계에 참가시키고자 하였다. 1925년 대종계의 경우 류창환·류중환의 계금 벼 1두와 돈 10전을 종중에서 각각 돈 70전으로 대납하였으며, 조환과 수환의 계금은 류형업이 대납하였다가 이를 종중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1925년에 추가로 참여한 19호 중 2호는 종중에서, 9호는 다른 계원이 대납하였다. 대납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정, 예컨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거나 외지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계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된다.

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계금을 납부해야만 하였다. 1878년의 「대종계안」에서는 예전의 종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으므로 따로 계금을 거두지 않았으나 「次宗契案」에서는 租 3두 혹은 4두를 거두었는데, 계원 15명 중 3두 납부자가 8명, 4두 납부자가 7명이었다. 1887년의 「宗契案冊」에서는 조 3두 6승 혹은 5두 6승으로 家勢에 따라 차등을 두어 출자하였는데, 출자 계원 28명 중 13명이 5두 6승, 13명이 3두 6승을 냈으며, 1892년에 추가 가입한 2호는 租 6두씩을 냈다. 1913년의 「증본권안」과 「문화류씨계안」에서는 租 1두와 錢 1전을 일괄적으로 출자하였으며, 1924년의 「대동계안」에서는 조 1두와 전 10전씩으로 정해졌는데, 70전의 돈으로 대납한 경우도 있었다. 이로 보아 출자하는 수단이 현물에서 화폐로 점차 이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서는 계금의 납부 외에 매년 1회 개최되는 계회에 참석하도록 정해졌다. 1878년 「대중계안」과 「차중계안」에서는 계회는 매년 10월 25일로 정해졌는데, 이유 없이 종회에 불참하는 계원에게는 벌전 2전을 납부토록 하였다. 1887년 「중계안책」에서는 계회는 매년 10월 19일로 정해졌는데, 불참자에 대한 벌전 규정은 없었다. 1913년의 「중본권안」에서는 券會日을 매년 10월 20일로 정했는데, 불참자에 대한 벌전 규정이 없었다. 그 대신 권회일과 별도로 3월과 7월 그믐날 경치 좋은 곳에 모여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면서 정의를 두텁게 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에는 별도의 회비를 거두도록 정하였다. 1925년 「대중계안」에서는 매년 10월 12일에 계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불참자에 대한 벌전 규정은 없었다. 1887년 이후 계회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금을 납부한 계원이 중계를 탈퇴할 경우의 규칙이 계안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즉, 1913년 중본권안의 ‘추가절목’에는 “계에 가입한 종족 가운데 탈퇴를 원하는 자는 입회한 해를 따지지 않고 그가 납부한 기금을 되돌려주되 그 사이에 애경사에 보조해준 금액은 일일이 따져서 우선 계의 재정에 첨가한 다음에 탈퇴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계안에는 탈퇴시의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

계의 임원으로는 계의 대표자로서 宗長이나 券長이 있고 그 밑에 실무자인 有司가 있다. 1878년의 「대중계안」에서는 錢有司와 穀有司 등 2인의 유사를 두었고, 「차중계안」에서는 1명의 유사가 錢穀을 수납 관리하도록 하였다. 1887년의 「중계안책」에서는 2명의 유사를 두어 錢穀을 관리하게 하고, 그 외의 종중인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913년의 「중본권안」에서는 그 명칭을 司券으로 바꾸어 2명을 두도록 하였다. 같은 해의 「문화류씨계안」에서는 유사 1명과 회계 2명이었다가 1924년에는 유사 2인과 회계 2인으로 바꾸었으며, 1925년에는 유사 1인과 회계 2인 외에 서기 2인으로 바뀌었다. 종장 혹은 권장으로는 계원 중 연장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유사는 실무책임자로서 계금의 수납과 관리를 담당하였다.

1.3. 문화류씨 종중계의 사업과 재정 운용

각 종계안의 절목에 나타난 계의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78년의 「대종계안」에서는 參議公의 제수전으로 매년 3월 28일에 錢 혹은 租로 1냥 5전을 지급, 대구에 있는 선산에 성묘하러 갈 때 노자와 향족대 지급, 대구의 종인이 왔을 때 노자 지원, 과거에 응시하는 종원에게 한양행 노자 1냥 지급, 과거 급제자에게 격려금 지급, 四喪을 당한 종원에게 부의전 5전 지급, 종회시 비용 획급 등이었다. 「차종계안」에서는 참의공과 참판공 양위의 제수전으로 매기일에 3전씩 지급, 사상을 당한 종원에게 부의전 2전 지급 등에서 약간 차이가 날 뿐 나머지는 「대종계안」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1887년의 「종계안책」에서는 대·소·생원과를 구분하여 과거급제자에게 격려금 지급, 대구에 성묘가는 사람에게 노자 지급, 四喪을 당한 종원에게 부의전 5전 지급, 추석과 설에 종장에게 饌代錢 5전 지급 등이 규정되었다.

1913년의 「중본권정안」에서는 혼례와 상례, 뜻 밖의 재난, 구황 등에 적당량을 지급하고, 농사용 종자 부족시에는 봄에 이를 지급하고 가을에 이자까지 받도록 하였다. 매년 정례의 계획 외에 3월과 7월에 정의를 두텁게 하기 위한 친목 모임을 개최하되 3년 째까지는 참석자의 회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이후부터는 계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토록 하였다. 특히 이 계안에서는 계가 결성된 지 10년 안에 혼사가 있을 경우 2냥, 상사에는 1냥을 부조하도록 하였으며, “塾을 설치하여 자손을 가르치는 일에는 이 券에서 힘이 닿는대로 돕는다”고 한 외에 10년 뒤에는 학비의 부족분을 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柳億의 생부모인 洸浩 양위의 제수전으로 벼 6두를 지급하고, 오미동 입향조 류이주의 정부인 양천허씨의 묘제 비용은 계원들이 각각 1원(5냥)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1925년 「대종계안」에서는 가난하여 혼·상사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계에서 구조하도록 하였다. 중본권안의 경우 계에서 종원의 자녀교육과 농사 및 구황 등에 지원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종계의 자금은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거두어 殖利를 통해 늘린 기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계의 기금으로 식리할 때의 이자율은 4할이 일반적이었지만 1878년의 「대종계안」과 「차종계안」에서는 “과거에는 이율이 4할이었지만 지금부터는 2할로 한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2할 식리로 운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후의 제안에서는 이율이 모두 4할이었다.

종계의 구체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1913년의 「문화류씨계안」과 1925년의 「오미동대종계」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913년의 「문화류씨계안」에서 1913~24년까지의 재정운영 기록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계원들로부터 수합한 租 1석 2두와 錢 2냥 2전을 연 4할의 이율로 매년 식리하다가 1922년에는 이 중에서 21냥 8전 4푼을 1919~22년까지의 4년분 계획비용으로 소급하여 제하고 나머지 錢穀을 다시 연 4할의 이율로 식리하였다. 1923년에는 식리 기록이 없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1924년에는 1922년 계획 후 남은 돈 15냥 7푼을 제외하고 벼 22석 10두를 식리하여 25년에 42석 14두가 되었는데, 이 중 5석을 52원 50전에 판매하여, 그 중 5원은 門長의 饌代, 26원 40전과 1원 90전은 문화류씨 족보 편찬을 위한 大譜所 住宴費와 그 後代, 18원 53전은 계획비, 1원 60전은 1925년 10월 16일에 계획시 보고할 문서를 작성하면서 文簿會費로 지출하였다. 이후 남은 벼 37석 9두 2승은 1925년 11월 12일에 전술한 4종의 종계가 합병한 대종계로 이월되었다. (1925년 석당 미가 160냥, 1925년 정곡환산율 40.91%를 적용하면 벼 37석 9두 2승은 미 15.33석=490원 56전)

1925년의 「오미문화류씨대종계안」과 「오미문화류씨대동계」에 의하면 종계원 총 51명 중 1924년에 29명은 벼 1두와 돈 10전씩을 내었고(합계하면 벼 29두와 돈 2원 90전), 3호는 벼와 돈을 합쳐 돈 70전씩을 내었으며(합계하면 돈 2원 10전), 3호는 벼는 내지 않고 돈 10전씩을 내어(합계하면 돈 30전), 이를 합계하면 벼 29두와 돈 5원 30전인데, 벼 29두는 말질을 다시 하니 31두가 되었다. 이를 연 4할의 이율로 식리(벼 1석은 류국선, 11두는 류제구 차용)하여 25년 10월에는 利租 12두 4작을 합쳐 벼 2석 3두 4작

표 4-1 1913년 「문화류씨계안」의 재정 운용 추이, 1913-25

	원금		이자		원리 합계	
	벼	돈	벼	돈	벼	돈
1914	1석 2두	2냥2전	8두8승	8전8푼	1석10두8승	3냥 8푼
1915			12두3승2홉	1냥2전4푼	2석3두1승2홉	4냥3전2푼
1916			17두2승4홉8작	1냥7전3푼	3석 - 3승6홉8작	6냥 5푼
1917			1석 4두1승 5작5리	2냥4전2푼	4석 4두5승1홉3작2리	8냥4전7푼
1918			1석13두7승 4작1리	3냥3전9푼	5석18두2승1홉7작3리	11냥8전6푼
1919			2석 7두2승8홉6작9리	4냥7전	8석 5두5승 4작1리	16냥6전3푼
1920			3석 6두2승 1작6리	6냥6전1푼	11석11두7승 5작7리	23냥2전8푼
1921			4석12두6승8홉1작3리	9냥3전2푼	16석 5두6승4홉	32냥6전
1922		10냥7전6푼 ¹⁾	6석10두2승5홉6작	4냥3전1푼	22석15두8승9홉2작	15냥 7푼
1924	22석10두 ²⁾		9석		31석10두	
1925	30석10두 ³⁾		12석4두		42석14두 ⁴⁾	

주: 1)1919-1922년 계획비로 21냥 8전 4푼 공제 후 잔액

2)1923년 계획비로 벼 5두 8승 9홉 6작 공제 후 잔액

3)1924년 계획비로 벼 1석 공제 후 잔액

4)42석 14두 중 5석을 52원 50전에 판매하여, 그 대금 중 5원은 門長 饑代, 26원 40전과 1원

90전은 大譜所 住宴費와 그 後代, 18원 53전은 계획비, 1원 60전은 文簿會費로 지출.

자료: 文化柳氏契案, 1913

이 되었으며, 돈 5원 30전 또한 4할로 식리(류형업이 차용)하여 25년 10월에는 이자 2원 12전을 합쳐 7원 42전이 되었다. 또한, 25년 10월에는 총 19호가 계금을 납부하였는데, 13호가 벼 1두와 돈 10전씩(합계하면 벼 13두와 돈 1원 30전), 3호가 돈 70전씩(합계하면 돈 2원 10전), 24년에 돈 10전씩만 내었던 3호가 벼 1두씩(1호는 이자 1승도 납부하였으므로 합계하면 벼 3두 1승)을 납부하여, 합계 벼 16두 1승(平升으로 19두 2승)과 돈 3원 40전을 납부하였다. 이리하여 1925년 10월에는 그 전해에 식리한 錢穀의 원리 합계와 25년에 납부한 전곡을 합쳐 벼 3석 2두 3승과 돈 10원 82전이 되었다.

한편, 「오미문화류씨대동계」에는 4종 합계 이전 高亭派宗契의 재정 운용 실태에 관한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은 ‘錢穀收入秩’, ‘乙丑年用下記’, ‘穀秩(乙丑冬收入)’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殖利에 의한 수입과 종계 소유 토지로부터의 토세(소작료) 수입, 그리고 1925년 지출내역 등

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먼저, 금전의 식리 상황을 살펴보면, 1924년에 원금 86원을 16명에게 4할의 이율로 식리하여 1925년에는 이자 34원 40전과 원금을 합쳐 120원 40전이 되었다. 금전을 빌려간 16인 중 류씨 종원이 6인, 타성이 10인이었다. 이외에 고정과 종계의 수입으로는 1925년 봄에 곡성의 산직에게 맡겨두었던 벼 1석 10두를 판 대금 21원, 청룡동에 있는 밭의 소작료 1원, 유사 류공환이 장부를 넘기면서 이월한 금액 13원 6전 등 합계 35원 6전이 있었다. 이 금액과 식리 원리금 120원 40전을 합친 155원 46전이 1925년 10월 12일 현재의 수입이었다.

이 수입 총액의 지출 내역을 기록한 것이 '乙丑年(1925년)用下記'로서, 이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155원 46전의 현금 수입에서 총 62원 59전을 지출하였는데, 표의 지출 항목을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 재분류하면, 2건의 산림계비와 改沙費·산직 방문비 등을 합친 묘지 관리비로 27원 44전(43.8%), 돼지 등 어육대·술값·대납 계금·이자·입보단금 등을 포함한 宗會費用으로 16원 63전(26.6%), 학교 기성비로 13원 52전(21.6%), 묘제와 제수 등 제사비용으로 5원(8.0%)이 지출되었다. 이 외에 1924년 겨울 도산 마을 뒤 장구항의 산판 1필지를 사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산판 매입 금액이 들어 있지 않으며, 과연 산판을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어쨌든 이리하여 잔액이 92원 87전이었는데, 1925년 11월 12일에 종계를 합병하였으므로 이 잔액은 합병한 대종계의 기금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과 종계에서는 또한 벼를 대여하고 식리하였는데, 1925년의 식리 상황을 보면, 벼 1석씩 3인에게 대여하고 이자 8두씩을 합해 원리금 합계 4석 4두를 받았다. 또한 곡성의 산직인 구교인에게 벼 13두 6승을 대여하고 이자 4두 8승과 함께 18두 4승을 받은 외에 1925년 소작료 벼 10두를 받아 합계 1석 8두 4승을 받았다. 김인곤에게는 1913년에 매입한 牛鳴坪의 콩밭 1두지의 소작료 벼 1석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이자 8두를 합친 벼 1석 8두에 1924년 소작료 벼 1석을 합쳐 2석 4두를 대여하고 그 이자 19두 2승을

고, 모두 타성인이었으며, 그 중 1인은 산직, 1인은 소작인이었다.

1.4. 문화류씨 종중계의 성격과 기능

이상에서 보았듯이 오미동의 류씨 종중계는 조상 숭배와 친족간 결속 및 친목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창설한 혈연조직이었다. 또한, 종계는 종중의 종원 전체를 종계에 가입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계의 창설시에는 계금을 대납하기까지 하면서 모든 종원을 종계에 가입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또한 종계에의 가입과 탈퇴는 원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자유로웠다. 종계에서 운용하였던 사업으로는 조상의 묘소와 선산에 대한 성묘·제사·관리, 종회 개최, 서당 및 학교 개설 후원 등이 있었으며, 1910년대 이후 계원에 대한 종계의 지원 대상으로 농사용 종자 구입, 흉년시 구휼, 계원 우환시 보조 등이 추가되었으나 이러한 일에 계금이 쓰인 실적이 없었다. 계금의 운용은 주로 식리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식화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계금으로 종답 등의 토지를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토지경작은 모두 소작에 의하였고, 특히 종계원은 종답을 소작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점에서 종계의 토지소유는 생산공동체적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종계의 단체적 성격은 혈연공동체라기보다는 임의단체적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회경제적 기능은 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종중계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어쩌면 조선 후기 16세기 이래 형성되었던 사족들의 향촌 지배 혹은 이른바 양반지배체제가 와해되는 가운데 이를 유지하고자 했던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 기타 각종 계의 구성과 운영

2.1. 養老契

양로계는 1898년 10월에 “한 齋(서당)의 학동들이(紀語, 1920.2.21)” 부모 공양과 상을 당했을 때의 부조를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결성 당시의 계원은 6인으로서, 9-15세의 연소자들이었으며, 1인을 제외한 5인이 류씨가의 친족들이었다. 이후 1916년에 최초의 계원들과 동년배인 趙贊永이 추가로 가입하여 7명이 되었다. 현전하는 養老契案에는 1907년에 계원 류형업의 조부 류계양이 작성한 養老契序, 節目과 契案座目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에는 계원 7인의 성명·생년월일·본관·字 등과, 계의 임원으로 契首 류봉환, 有司 류봉환·이태근, 고직 박명복의 이름이 적혀 있다. 계의 임원 중 庫直으로는 처음에 류형업가의 하인 徐蒙屈, 金萬景이었다가 1919년 10월부터 하인 朴命福으로 교체되었다. 절목에는 ①1898년에 계원 각인이 錢 1냥씩을 납부하고, 1899년에 백미 3되씩을 추가 납부하여 계금 조성, ② 유사는 연령 순으로 매년 윤회, ③ 계원의 질병·제사·출산·혼인 등의 이유 없이 불참자는 벌전 1냥 부과, ④탈퇴자에게는 원금 1냥과 백미 3되 지급, ⑤계금은 3년 후부터 사용, ⑥계회는 매월 20일, ⑦상을 당한 계원에 게 喪布代錢 6냥과 부의금 2냥 지급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양로계의 운영에 관해서는 류형업의 일기 「紀語」에 언급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양로계는 결성된 지 12년째인 1909년까지는 탈 없이 운용되었다. 그러나 1909년 10월 30일에 “양로계의 돈을 각 사람에게 40냥씩 나누어 쓰게 하고, 10냥은 고지기 서몽굴과 김만경에게 따로 주고, 나머지 돈과 계원 6명으로부터 1냥 5푼씩 수합한 것을 합친 10냥 4푼은 이자를 늘리기 위해 유사 이한근(이태근과 동일인)에게 주었다. 백미 35되 8홉은 내죽에 사는 친척 一櫃이 빌려갔다.” 이 때 계금을 분배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

다. “1909년 겨울을 맞아 돈이 아주 귀하여 금쪽과 같았으니, 쌀 1되의 값이 불과 3전이었다. 이 때 계금은 거의 300냥에 가까와 처리할 수 없었고, 더욱이 계원 중에 버티는 자가 있어서 각기 40냥씩을 나누었다(紀語, 1920. 2. 21).” 즉, 1909년이면 계원들의 나이가 21-27세에 이르러 모두 가정을 갖고 있던 터에 “돈이 아주 귀하여” 계금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1914년 겨울에는 “제2차로 각기 4냥과 쌀 22되씩을 나누어 가졌다. 이 2차의 분배는 다른 까닭이 아니고 당시 계원의 (부모)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고, 각기 동서로 분주하여 모이기가 어려웠으며, 유사를 정한다 해도 계곡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사도 虛名이고, 傳掌이 허물어지니 이는 계가 깨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 계금을 나누었던 것이다(紀語, 1920.2.21).”

양로계가 깨지게 된 것은 1916년 겨울에 추가 가입한 조찬영이 계의 유사를 맡아 “다음 해 계 모임에 허위문서로 契據를 작성(紀語, 1920.2.21)”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각 계원에게 3냥 3전 3푼과 쌀 10되 8홉씩을 나누고, 새로 들인 고지기 박명복에게도 쌀 4되를 주었다.” 류형업은 “양로계를 파하면서 그 아쉬움을 글로 적었다(紀語, 1920. 2.24)”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양로계의 성격을 요약하면, 계 조직의 목적은 상사시의 부조였지만 식리를 통해 계금을 운용하고 계금 규모가 증대되자 이를 계원들이 나누어가짐으로써 결국은 식리계적 성격으로 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9-15세의 연소자들이 일찍부터 殖利와 扶助를 목적으로 하는 계를 조직하여 20여년간 이를 운용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2.2. 金蘭契(친목계)

류형업이 가입하였던 또다른 계로는 金蘭契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별도의 문서는 남아 있지 않고, 류형업의 일기를 통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즉, 1912년 3월 20일에 “마을 사람 17인이……각기 10원씩을 내어 그 돈을 자본금으로 삼기로 하되 원금 20원당 이자(실체는 원리금)는 1원 40

전씩 매월 두번 내기로 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20원을 빌려가서 한 달에 두 번 1원 40전씩 원리금을 상환하여 10개월 20회에 원리금 합계 28원을 완납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자율은 10개월에 4할인 셈이었다. 계획은 매월 5일과 20일에 갖기로 하였으며, 큰 사유 없이 불참하는 계원에게는 1냥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또한, 계 모임 장소는 丹嶺의 金貞燮家로 정하였으며, 당일의 회비는 나이 순으로 차례로 맡기로 하였다. 이후 4월 5일 모임에서 금란계 회비로 각기 5원씩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20일자 모임에서 다시 1원씩을 더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회원 1인당 납부금은 “세차례 낸 돈을 합하니 16원이며, 엽전으로는 80냥(紀語, 1912. 4. 20)”이었다. 엽전 80냥의 계획비는 1912년 당시 류씨가에서 미곡을 판매하였던 가격인 1석당 구례 지방의 미곡가 80냥(박석두·이두순, 1995.8, p.53의 표 3-3)으로 환산하면 쌀 1석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이는 또한 1912년 당시 류씨가 소유 논 1단보에서의 소출인 미곡 1.1석(박석두·이두순, 1995.8, p.14의 표 2-2)과 맞먹는 것이었다. 1911년 오미동 농가호수 34호 중 순소작농이 19호였으며, 그들의 평균 경작 규모가 5두락(28면의 표 2-15 참조)이었음에 비추어 금란계의 계획비는 거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거금을 계획비로 납부할 수 있는 금란계의 계원들은 부유한 농가가 아니면 안 되었을 것이다.

금란계의 계원 수는 1912년 3월에 17명이었다가 두달 후인 5월 5일 모임에서 5명이 추가 가입하여 22명이 되었다. 추가 가입자는 최초 계원의 납부금보다 8냥이 많은 88냥을 납부하였다. 이들 중 오미동 거주자로는 류형업(당시 26세)과 그의 증부 류인환(당시 29세) 등 2인이었다. 계원들의 연령을 보면, 애초의 계원 17명은 26-60세였으며, 추가 계원 5명은 34-67세였다. 류형업에 의하면 “전체 군내 마을에 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老少들과 함께 계를 만들어 이름을 금란월계(기어, 1914. 1. 20)”라고 하었다고 한다.

금란계에 관한 기록은 이 이상 없어 계를 조직한 목적이나 운용 실태 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계원들의 연령 구성, 계금의 규모와 식리

방식 등으로 보아 구례군 내 상류층 가문들의 친목과 금전 조달 목적의 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學 契

오미동에서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學契가 결성된 것은 1870년이였다. 계의 결성과 함께 契案이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나(紀語, 1911.1.14), 이에 관한 기록은 류형업의 일기 「紀語」의 여기저기에 언급된 것 외에는 없으므로 紀語의 기록을 정리하여 학계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870년에 류씨 문중인들과 오미동 인근 하죽 마을 사람들 수십명이 ‘文學契’를 결성하고 두 번에 걸쳐 각각 쌀 5두씩을 거두었다. 이후 “혹 얻어 오거나 하여 조금씩 축적함으로써 크게 만들어 자제들을 교육하는 데 그 공이 컸다(紀語, 1914. 윤5. 7)”고 한다. 예컨대, 1899년 1월 5일자 기록에 의하면, “서당을 마련하기 위해 金鼓(농악대)를 창설”하고 1주일 동안 “가까운 동네까지 가가호호에서 돈과 쌀을 거두어 모았는데, 제법 많았다”고 한다. 이 때 “농악대에 동원된 사람마다 품삯으로 각 2전씩 지급(紀語, 1899.1.11)”한 것으로 보아 서당을 만들고자 한 사람들이 모금을 위해 농악대를 고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문학계의 결성과 활동에 힘입어 오미동과 죽천의 두 마을에 별도의 서당이 각각 존재하였는데, 오미동의 서당이 1905년 전후에 폐지된 반면 죽천의 서당은 계속 존속하여 1910년에는 죽천의 서당인 竹川齋를 方丈學塾으로 개칭하고 오미동과 죽천의 서당을 합쳤다. 그 후 1914년 3월 1일자로 류형업은 자신의 가택인 雲鳥樓 안에 별도의 서당을 개설하였다(紀語, 1914. 3. 1).

한편, 문학계의 기금으로 논을 구입하였던 듯, 1908년 12월 6일에 “齊穀을 계원 17가구에 각기 荒租 2석씩 나누어주었는데, 移散人과 出契人 몇은 빠졌다(紀語, 1908.12. 6)”고 하였음에도 1910년에 문학계 소유 齊畜이 16두락에 달하였다(紀語, 1914. 윤5. 3). 문학계의 錢穀 등은 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었을 것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1910년에 문학계 소유 제당 16두락을 매각하여 그 대금의 대부분은 토지면에 학교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는 1911-13년에 竹川合齊, 즉 방장학숙의 공동경비로 사용하였다(紀語, 1914. 윤5.3). 학비는 학동들이 자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齊錢을 학비로 쓰는 것을 계원들이 반대함으로써 공동경비에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문학계가 깨지게 된 것은 계원들의 내분과 갈등에 의한 밀고와 이에 따른 헌병의 조사 때문이었다. 1914년 윤5월 3일에 “齊契의 錢穀을 조사하는 일 때문에” 헌병이 탐문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더니 “헌병이 출장 나온다고……통지했기 때문에 남원, 광양 두 숙부께서 제계를 설립한 이후의 수입 지출 장부를 가지고 舟峙에 가서서 헌병과 대질하였으나 한 푼의 돈도 장부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헌병은 위에서 사용한 돈을 틀리게 기록한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등 이유 없이 행패가 심했다.” 이처럼 문학계의 수입 지출에 대해 헌병이 조사하게 된 데 대해 류형업은 “좁은 껍질에서 생기듯 여기 齊員 이외의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누가 모함할 수 있는가”라고 하여 문학계원 중의 누군가가 모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떻든 이로부터 3일이 지난 윤5월 7일에 “계원 13집이 계를 깨뜨리고 齊契錢 나머지를 각각 17냥 6전 5푼씩 나누었고” 계원 간에 불신이 생겨 “영영 왕래를 안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류형업 역시 일기에서 계원 13집 중 “타성이 두 사람 있는데, 혹시 위와 같이 일을 몰래 꾸민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였다(紀語, 1914. 윤5.7).

문학계는 1870-1914년까지 45년이나 존속되었다는 점, 오미·하죽 양 마을의 근 20호가 참여하였다는 점, 계의 재산이 논 16두락에 이르렀다는 점, 소위 구학문을 가르치는 서당을 설립 운영하다가 1908년 이후 자발적으로 신학문을 교육하는 면 단위 소학교 건립에 앞장서는 한편 계 소유 재산의 대부분을 그 설립 기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점, 그러나 결국 계원 간의 불신과 내분에 의해 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2.4. 松契

松契란 “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계이다.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는 특정의 산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지역계의 일종이며, 조직 범위는 동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의 동리(山麓을 공유하는)를 포괄하는 경우도 많다. 송계는 삼림보호를 직접 관장하는 役員을 두고 교대로 이를 맡아 순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분묘를 보호하고, 나아가 삼림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삼림 보호는 국가(관)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송계는 관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김필동, 1989, p. 50).”

류씨가에서 가입하였던 송계는 1881년 8월 26일에 결성되었다. 그 동기에 대해 류제양은 是言에서 “구례현의 東門 안 농민들이 陽腸坪에 소나무를 심고, 주위에다 갈대, 그리고 西市川에 화살대를 길렀는데, 술은 이미 숲을 이루고, 갈대는 벌써 재물을 늘려주었으며, 화살대는 이익을 다투게 하였으므로 읍내의 백성들이 계를 맺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계책을 삼고자 하여 민원을 따른 것이다(是言 1881.8.26)”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송계에 관해서는 별다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류형업의 조부 류제양이 양장평 송계에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류형업의 紀語(1900.9.14, 1902.9.14, 1903.9.14, 1904.3.14, 1907.4.4)에 나오며, 1910년 3월 3일자 일기에는 이 날 양장평을 측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한 1912년 7월 3일자 일기에서는 “작년 신해년(1911년) 여름 양장평을 350냥을 받고 궁산 고광문에게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뒤로는 송계나 양장평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로 보아 이 송계는 계속 존속되다가 1911년에 양장평을 궁산 마을의 고광문에게 매각하면서 해체되었으며, 또한 확실치는 않으나 이 송계는 관이나 행정조직과 무관한 자율적 임의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02년에는 양장평 송계와는 별도로 구례군 전체에 걸쳐 면 단위로 松契가 결성되었다. 류씨가에 현전하는 송계 관련 문서 9건이 모두 1902-4년에 작성된 문서로서, 토지면 내 각 동리에 거주하는 술밭 소유자

들을 포괄하는 토지면 송계가 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들의 내용에 의해 토지면 송계의 구성과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면 송계는 “本面の公議가 일제히 일어나 禁松의 규약조목을 節目으로 만들어, 보고하여(下帖吐旨面中及松有司各洞洞首, 1902.4.28)” 구례군수의 명으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節目冊, 正草件, 出標冊, 下帖, 圖畧, 每局錢 등의 문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나(松契有司傳張記, 1902.9.16), 節目冊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송계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여타의 현전 문서에 의하면, 면 내의 각 동리에 산판을 소유한 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송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임원으로는 面の執綱이 송계 유사를 겸하고 각 동리의 洞首가 송계의 각종 契錢을 거두는 책임을 맡게 하였다. 이로 보면 면 단위 송계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조직이 아니라 면·리 단위 행정조직의 통제를 받는 준행정조직의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面約도 송계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吐旨面約正副正書目, 1902)

송계의 기금은 계원이 납부하는 다음과 같은 3종의 계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산판 소유자이자 송계의 계원이면 누구나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던 소유 산판 한 판당 3전씩의 局錢, 둘째, 몰래 벌목하였을 때 부과하는 犯伐條, 셋째, 봄가을 벌목할 때 매매한 소나무 대금의 1/10을 내도록 되어 있는 賣買什一條 등이었다(私通面中, 1903.2.4). 따라서 국전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3종의 납부금은 면의 집장이 겸임하는 송계 유사의 책임 하에 각 동 洞首가 거두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03년 2월(私通面中)과 1904년 6월 6일(私通各洞中)에 局錢의 납부를 독촉하는 통문을 연이어 발송한 것으로 보아 局錢의 수납이 원활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2년 3월 20일에 작성하여 1904년 6월 6일자로 회계한 「吐旨面內所在松田及主管人姓名冊」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4-3>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1902년 3월 현재 토지면 내 28개 마을에 松田을 소유한 소유자는 200여명이었으며, 산판의 수는 225판이었다. 이 중 오미동, 하죽, 내죽, 중산, 상

표 4-3 토지면의 마을별 술발 소유자 수와 송계 납부 상황, 1904

동리명	소유자 수	술발 수	송계납부금			납부	미납
			局錢條	什一條	합계		
오미동	5	17판	5냥1전		5냥1전	3냥	2냥1전
하 죽	4	5판	1냥5전		1냥5전	1냥2전	3전
내 죽	3	3판	9전		9전	-	9전
중 산	18	21판	6냥3전		6냥3전	3냥	3냥3전
상 죽	14	14판	4냥2전		4냥2전	-	4냥2전
중 대	5	5판	1냥5전		1냥5전	-	1냥5전
불 당	5	5판	1냥5전		1냥5전	1냥5전	-
울 치	9	9판	7냥2전*		7냥2전	1냥2전	6냥
용 두	14	17판	5냥1전		5냥1전	-	5냥1전
원 내	1	1판	3전		3전	3전	-
환 동	3	3판	9전		9전	9전	-
단 산	10	10판	3냥	7냥	10냥	-	10냥
월 곡	1	1판	3전		3전	-	3전
구만리	7	7판	2냥1전		2냥1전	-	2냥1전
도 산	9	9판	2냥7전	1냥5전	4냥2전	-	4냥2전
송 정	5	5판	1냥5전		1냥5전	-	1냥5전
의 한	10	10판	3냥		3냥	-	3냥
내 한	14	14판	4냥2전		4냥2전	4냥2전	-
의 동	15	15판	4냥5전		4냥5전	4냥5전	-
중 추	12	12판	3냥6전		3냥6전	3냥	6전
오 평	1	1판	3전		3전		3전
운수동				6전	6전		6전
소 계	165	184판	59냥7전	9냥1전	68냥8전	22냥8전	46냥
평 도		5판	1냥5전				1냥5전
당 치		2판	6전			-	6전
농 평		4판	1냥2전			-	1냥2전
원 기		11판	3냥3전			-	3냥3전
남 산		7판	2냥1전			-	2냥1전
신 촌		7판	2냥1전			-	2냥1전
중 리		5판	1냥5전			-	1냥5전
소 계		41판	12냥3전				12냥3전
합 계		225판	72냥				

* 7냥 2전은 산판 9곳의 국전 2냥 7전과 炭窟 3곳 각 1냥 5전씩 4냥 5전의 합계임.

자료: 土旨面內所在松田及主管人姓名成冊, 1902 및 私通各洞中, 1904 중 松契局錢記

사(마산면), 상죽, 불당, 냉천, 원내, 환동(2판 소유), 단산, 구만, 도산, 내한, 외동 등 15개 마을이 16판의 洞有林을 소유하고 있었다. 오미동 거주자로서는 류제양이 5판, 류제표 7판, 류제혁 2판, 류수동이 2판의 산판을 소유하여, 토지면에서는 오미동 거주자들이 산판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송전 한판당 3전씩의 局錢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표 4-3>에서 보듯이 1904년 6월에도 局錢條와 什一條 총액 68냥 8전 중 22냥 8전(33.1%)을 거두었을 뿐 46냥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면·리의 행정조직을 동원하였음에도 계금의 납부 실적은 극히 저조하였던 것이다.

토지면의 송계에 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이 이상 알 수 없다. 일제시대 들어 삼림계와 삼림조합이 전국적으로 조직됨으로써 행정적인 통제로 대체되었는데, 이 때 해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871년에 40호가 살았던 오미동은 1893년에 34호로 줄어들었고, 1898년에 39호로 다시 늘었다가 다음해에는 34호로 줄었으며, 1902년에 다시 39호로 늘었다가 1913년까지 35~37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30~31호 수준으로 줄었다. 거의 매년 호수 증감이 되풀이되는 등 끊임없이 거주 가호가 변동하였던 것이다.

이를 1902~09년 기간의 자료를 통해 내부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미동에서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3명이 전출하고, 2명이 전입한 셈이었다. 마을 안에서의 이사도 활발하여 1902년 당시 거주하던 39호 중 7호가 1회 이상 마을 안에서 이사하였으며, 특히 1호는 7년 동안에 3회나 이사하여 마치 현대 도시의 셋방살이와 방불했다. 그는 류씨가 사노 출신으로서, 류씨가 소유의 협호를 3회에 걸쳐 전전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 단독가옥에 살던 4호는 셋방으로 이사하였으며, 셋방에 살던 1호는 단독가옥으로 이사하였다. 전입·전출·이사자들은 모두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거나 아예 농사가 없는 층들이었다.

근대화 이전 농경 정착사회에서 이처럼 가구변동이 극심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총 39호 중 29호가 가대를 소유하지 못하고 류씨가 소유의 협호에서 살았으며, 4-5호가 농사가 전혀 없었고, 19호가 순소작농으로서 호

당 5두락 미만의 전답을 경작하는 영세빈농이었다. 더욱이 오미동은 류씨 일족의 동족부락으로서 토지면 전체의 경우에 비해 사노·속우 등 천민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때의 유습이 1902년까지도 남아 호칭 등에서 예전의 천민 출신을 하대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낮은 신분층은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층 신분층에 비해 열악하였다. 1890년과 95년의 자료에 의하면 이른바 양반층에 속하는 가호의 비율이 83%에서 84%로 늘었으며, 천민천역층의 비율이 6%에서 4%로 주는 등 신분제는 와해 일로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양인층이 천민층보다 오히려 열악해지는가 하면 천민층 가운데 비록 소작농지나마 10~20두락을 경작하는 사례가 생겨난 반면 몰락 양반층의 경우 무농이나 셋방살이로 전락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낮은 신분층은 경제적으로도 열악하였다. 예컨대 토지면의 신분층별 호당 평균 경작규모를 보면, 1890년에 양반층이 7.6두락으로서 천민층과 양인층의 2배에 달하였다. 특히 오미동의 경우 1890년에 양반층의 호당 경작면적은 천민층의 4배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양반층이 주로 기와집이나 행랑채가 딸린 집, 혹은 최소한 초가집에서 살았음에 반해 천민층에서는 기껏해야 초가집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막살이에서 살았다. 이런 격차는 1895년에는 상당히 해소되는 추세였지만, 그것은 천민층의 상승 때문이라기보다는 양반층의 몰락에 기인한 것이었다. 주거 및 경작 여건이 개선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미동의 경우, 1902년까지도 성명표기 방식의 차이와 구별 등의 방법으로 천민층과 양반층을 구별하고 차별하였다. 이 시기에 천민 출신자들에게는 字나 宅號, 호명, 별칭 등 그 어느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고 본래의 성명으로 부르거나 표기하였던 것이다. 1902년 당시 천민으로 구별되었던 7호의 대부분은 류씨가 사노거나 한량 출신의 후손들이었다.

1909년에 오미동의 가구 35호 중 28호가 논 270두락을 경작하였으며, 25호가 밭 23두락을 경작하였고, 논밭 어느 것이라도 경작하는 농가는 30호였다. 5호는 논밭을 전혀 경작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작규모별 분포를 보

면, 35호 중 30두락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 4호(11%)가 전 경작지의 57%를 경작하였으며, 10두락 미만 경작자가 24호(68.6%)였다. 몇 십 정보에 달하는 대지주는 아니지만 마을 안에 100여두락 이상을 소유하고 20-30두락을 경작하는 지주겸 자작농 2호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타 농가들은 영세소작농의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1911년의 자료에는 농지소유자별로 경작자와 농지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총 34호의 가구 중 23호는 대전답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하였고, 27호는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여 류씨가 협호로 살았으며, 대·전·답을 소유한 가구는 7·8·9호에 불과하였다. 전이나 답을 소유한 가구 11호 중 8호가 10두락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였으며, 50두락 이상을 소유한 2호가 오미동민이 경작하는 농지의 75.5%를 소유하고 있었다. 농사가 없는 4호를 제외한 30호 중 63%인 19호가 순소작농이었으며, 순자작농은 1호였는데 그나마 3두락을 자작하였다. 자작지주 4호가 전 경작지의 43%를 소유한 반면 순소작농 19호의 경작 면적은 15%에 불과하였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30호 중 76.7%가 전답 10두락 미만, 50%가 5두락 미만을 경작하였으며, 15두락 이상 경작농가 4호는 모두 류씨가 일족이었다.

요컨대, 1910년경 오미동은 34-35호의 농가 중 2-4호가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 및 경작함으로써 절반 이상의 농가들이 5두락 미만의 소작지로서 생계를 잇는 경제상태에 있었다. 사회적 신분의 차별, 경제적 궁핍이 오미동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주 대열에 낄 수도 없는 규모의 류씨가는 예전의 지체 높은 가문으로서의 위세와 체면 등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류씨가에서 중중계를 유지 발전시키려 하고, 서당을 세워 자녀 교육에 힘쓴다든지, 식화계적 성격과 친목계적 성격을 겸하는 각종의 계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 등이 모두 이와 같은 마을 혹은 면 단위의 사회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야를 다시 구례군과 토지면 차원으로 넓히면, 1893년에 구례군에서는 전라감사의 지시로 봉성향약을 조직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각 면에

본래 의미의 향약과는 다르나 보조행정기구 내지 부세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면약·면회 등이 존재함으로써 향촌 내에 남아 있는 양반층의 영향력을 향촌 통제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들어 있었다. 이리하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계통적 향약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때 결성된 봉성향약의 운용에 관해서는 1894년에 반포된 「향약장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봉성향약에는 班常을 구별하지 않고 약전 2냥씩을 내면 되었으나 실제 가입자는 양반에 국한되었다. 매인당 2냥씩의 기금은 8개면에 배정 식리하여 향약의 운영자금으로 삼았는데, 그 관리는 읍약에서 직접 하는 대신 면약에서 관리하고 읍약은 감독하는 식이었다. 읍약 가입자 중 일부는 면약에도 가입하였으나, 토지면의 경우 읍약 가입자 57인 중 14인은 면약적에 들어 있지 않았다. 계통조직으로 결성되었음에도 실제 구성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읍약은 매년 봄·가을에 면약정 이하 임원들을 모아 향교에서 강약한다거나, 매월 1일 면약정이 그 면에 모여 강약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읍약은 향약 임원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실제 향약의 실시는 면약에서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읍약은 그러나 읍약적에 참여한 양반들의 모임이었고, 도에서 읍약을 결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역시 조세금납화 조치와 함께 부세와 징세의 분리에 따른 향약기구의 징세기구화에 목적이 있었다.

토지면약의 경우 1812년에 군정사출전 중 각 면에 10냥씩이 배정되자 이를 원금으로 삼아 이식을 통해 3년만에 100냥이 되자 1814년에 면약이 결성된 바 있었다. 이 때의 면약은 그야말로 관권보조 및 부세문제 해결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으며, 하부조직과 상부조직이 모두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긴 하나 양반층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1887년 이후 각 동에서 기금을 모아 면수·훈장·존위 등의 例下錢 등이 정례적으로 지출되었으며, 1890년 3월의 토지면 공전 지출 기록에는 향회 및 면회 당일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이것이 1814년의 면약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유형업은 이때의 면약이 “실상은 없어진 지 오래”라고 하였는데, 이는 면약이 관치보조적인 성격에 불과하여 향

약기구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도 생각된다.

1893년에 결성된 토지면약 역시 1인당 1냥씩을 내고 가입한 양반들의 모임이었다. 면약의 임원으로는 도약정·부약정·직월·사화 등의 임원을 두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약장·부정·색장·사화 등의 임원이 있었다. 토지면약에서는 1년에 4회의 모임을 갖고 강약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면약은 향약으로서의 활동보다는 면 행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면약전을 동리별로 배정하여 식리한다든지, 면약의 임원이 면 운용의 주체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25가작통(25호가 1통이 되는 것)'의 별검이 되어 동리를 감독하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이처럼 면약이 면의 행정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은 동리별로 영향력이 있는 양반층을 각종 세금의 징수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면약 기구와 별도의 면 행정 및 면 재정 운용을 보면, 면에서는 면의 경비로 사용되는 公錢을 각 동에 배정 식리한 자금으로써 충당하였다. 그 경우 본전이 있기도 하였지만 본전이 없이 명목상으로 본전이 있는 것으로 하여 각 동리별로 이를 부담케 하기도 하였다.

오미동 동약 역시 1893년에 읍약과 면약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동약은 오미동의 36가와 하죽의 14가 등 50가가 2개의 통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임원으로는 25가작통을 감독하게 되어 있던 별검 2인과 각 동의 洞首 등이었다. 25가작통은 1896년 10월과 11월에 10가작통·5가작통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각 동이 향약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동별로 부세한 것과 관련이 있다. 동약의 가입금은 없었으며, 동약에는 반상구별 없이 전 동민이 참여하였다. 동약에는 별도의 조직이나 약적이 있지 않고 면약의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약에서는 권선징악 등 본래의 향약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부세수취기구로 역할하고 있었다. 동의 운영과 관련된 류씨가 소장 자료도 그 중심은 부세 운영과 관련되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1887년 鳩財錢(구재란 모금을 말함)을 마련할 때 각 동에서 개인적으로 염출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洞

中'에서 마련하고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다.

동약과 별개의 동 운영과 관련되는 자료 또한 부세와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중의 지출 항목을 보면, 동제·동회·부의·제초노동력 고용 등의 비용도 들어 있지만 주된 항목은 호세·구재전·보민전 등 각양의 공전 즉 잡세에 대한 마을 전체의 대응이었던 것이다. 마을에서는 이들 비용을 洞米·洞租 등 동중의 재산으로 납부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동민을 호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 분정하거나 빈부 가호를 적절히 배합한 주비짓기(그릅핑에 해당됨)에 의해 분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준행정기구 혹은 면이나 마을 단위의 조직 외에 그야말로 자발적 조직으로서 각종의 계 조직이 있었다. 류씨가 경우 그 중 종중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속한 조직이었다. 종중계는 대체로 출범시 종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가입과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계의 기금은 매회당 납부한 계금을 모아 식리함으로써 운용하였다. 종중계는 조상숭배와 친족간 결속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종계의 주된 사업은 성묘와 제사, 선산관리, 그리고 부조 등이었다. 종계의 경우 종중답 등 공동재산을 마련하여 운용자금의 수입원으로 삼기도 하는데, 류씨가의 종계에서는 종답은 종원이 소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종중답이 있는 종계라 하더라도 그 단체적 성격은 자발적 임의 단체에 다름 아니며, 공동체적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공동체 혹은 승조공동체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참 고 문 헌

<류씨가 소장 자료>

- ① 구례군 邑約 관련 자료: 鳳城鄉約籍(爻周冊), 鄉約錢捧上冊, 鄉約錢各面逐戶播殖冊, 求禮邑鄉約條, 邑約(追入記), 邑約錢會計記(이상 1893년), 鄉約章程(1894), 邑錢會計記(1895), 求禮郡鄉約約則草案(1935)
- ② 구례군 戶布錢 관련 자료: 求禮縣各郡丁均布成冊(1871), 甲午倉結敎中還推條記, 下帖土旨面鄉員及各洞里正統首, 乙未六月二十五日求禮邑戶布錢排記, 乙未六月二十五日下帖土旨面鄉員及各洞里正, 下帖土旨面鄉員及各洞里正, 下帖土旨面鄉員, 下帖土旨尊位(이상 1895)
- ③ 구례군 社還(還穀) 관련 자료: 社還條例(1895),
- ④ 토지면 面約 관련 자료: 土旨面約節目(1814), 土旨面新執鳩財冊(1890), 土旨面鄉約函所藏諸件記(1904), 土旨面首尊位案冊(1892), 土旨面邑鄉約人名錢數成冊(1893), 土旨面面鄉約人名錢數成冊(1893), 鄉約錢邑面條播殖都合冊(1893), 邑約錢(1893), 邑鄉約錢條(1893), 土旨面鄉約籍(1893), 土旨面鄉約任司案(1893), 土旨面鄉約會費記(1893), 土旨面鄉約講會費成冊(1893), 私通面中(1893), 土旨面鄉約講信會費成冊(1893), 土旨面邑約入籍人(1893), 土旨面邑約錢(1893), 土旨面約錢(1893), 土旨面都鄉約入籍員數記(1893), 土旨面都鄉約入員記(1893), 土旨面約入籍員數記(1893), 土旨面約會下記(1895), 土旨面約錢及邑約錢利條收捧冊(1902~04),
- ⑤ 토지면 公錢 관련 자료: 土旨面各公錢排下都合冊(1890~96), 土旨面新舊鳩財冊(1892), 土旨面各樣排下節目(1892), 土旨面中錢收利取殖冊(1892~94), 土旨面中有本錢收利取殖冊(1892~95), 面錢各洞均殖成冊(1893~94), 面用下記(1895), 面中成冊(1894~95), 土旨面會記(1895), 各洞公錢未收冊(1895), 各洞未收公錢記(1895), 土旨面公貨查實冊(1893), 土旨面春等各公錢名目已納成冊(1895), 土旨

- 各公錢春等收利記(1895), 補利秋等條(1895),
- ⑥ 토지면 관련 기타 자료: 五家點考件記(1893), 洞有司統長記(1893), 土旨面各洞里正姓名成冊(1895),
- ⑦ 오미동 동약 관련 자료: 洞約讀法(1893), 土旨面美洞鄉約錢邑面條播殖冊(1893),
- ⑧ 오미동 公錢 관련 자료: 五美洞各公錢有無本播定記(1880), 土旨面五美洞本還米分殖成冊(1893), 美洞本還七石四斗均殖記(1893), 美洞各錢穀可攷并記冊(1893~1900), 美洞事目冊(1898~1902), 美洞事目冊(1902~1905), 洞米分給記(1905~07), 洞租分給記(1907~09), 洞租分給記·洞租收捧記·戶布分排記(1907~09), 土旨面五美洞學校錢播殖成冊(1908), 五美洞大同之役免闕及出關日記(1913), 五美洞錢穀冊(1916~22), 美洞讀書齋鳩財金鼓文(1899).
- ⑨ 오미동 관련 기타 자료: 五美洞閩史(1908),
- ⑩ 文化柳氏 宗中契 자료: 文化柳氏大宗契案(1878), 文化柳氏次宗契案(1878), 文化柳氏宗契案冊(1887), 文化柳氏重本券正案(1913~25), 文化柳氏大宗契案(1924~25), 五美文化柳氏大同契(1924~25), 文化柳氏契案(1925).
- ⑪ 養老契 자료: 養老契案(1898~1920).
- ⑫ 松契 관련 자료: 土旨面松契及面會條約(1902), 土旨面所在松田及主管人姓名冊(1902), 土旨面內松田斫伐時出標冊(1902~03), 土旨面約正副正書目(1902), 下帖土旨面中及松有司各洞洞首(1902), 松契有司傳張記(1902), 私通面中(1903), 私通各洞中附松契局錢記(1904), 壬戌秋攷覽記(1922).
- ⑬ 기타 계 자료: 輔仁契(1932).
- ⑭ 오미동의 신분별·계층별 구성에 관한 자료: 土旨面家座成冊(1890, 1895), 柒錄冊 중의 戶外雇丁春秋使役件(1902-1907) 및 新起田畝調查收稅記(1905-1927), 隆熙三年四月五日美洞新結冊(1909), 求禮郡土旨面五美洞正結及火粟冊(1911), 五美洞正火結數正冊(1913), 農家日記(1912~42), 地稅分定記(1914~41), 金谷(穀)收支帳(1906-1920)

<연구 문헌>

강창규, 1966, “계가 里共同體에 미치는 영향,” 「農業經濟研究」 8.

김경일, 1984, “조선말에서 일제하의 농촌사회의 ‘동계’에 관한 연구,” 「한국학

- 보」 35.
- 김무진, 1986, “朝鮮中期 사족층의 동향과 향약의 성격,” 「한국사연구」 55.
- 김삼수, 1964, 「한국사회경제사연구-계의 연구-」, 박영사.
- _____, 1977, “개항 전후기에 있어서 ‘계’의 공동체의 변화(1),” 「논문집」 17, 숙명여대.
- _____, 1977, “개항 전후기에 있어서 ‘계’의 공동체의 변화(2),” 「한국정치경제연구소논문집」 6, 숙명여대.
- 김용덕, 1978, 「鄉廳研究」, 한국연구총서 36, 한국연구원.
- _____, 1978, “향약과 향규,” 「한국사상」 16, 한국사상연구회.
- _____, 1979, “京在所論,” 「한국학보」 90.
- 김용섭, 1970·71,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I, 일조각.
- 김용섭, 1984, “조선후기의 대구 부인동 동약과 사회문제,” 「동방학지」 46·47·48 합집.
- 김인걸, 1981, “조선후기 향권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충청도 목천현 사례-,” 「한국문화」 2.
- _____, 1984, “조선후기 향촌통제책의 위기-동계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58.
- _____, 1983, “조선후기 향안의 성격 변화와 재지사족,” 「김철준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_____, 1988,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19
- _____, 1992, “한말 구례 지방의 사회조직과 그 운영,” 「한말 일제하 농촌사회 구조와 사회생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준형, 1984, “18세기 里定法の 전개-촌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진단학보」 58.
- 김필동, 1985, “‘계’ 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계의 사회사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사회학연구」 8.
- _____, 1986, “삼국-고려시대의 향도와 계의 기원,”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
- _____, 1989, “조선전기 향약의 보급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의 사회와 문화」 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현영, 1989,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士族支配構造의 변화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
- 김홍식, 1981,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기본구조」, 박영사.
- 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1862년 농민항쟁」, 동녘.
- 박경하, 1987, “倭亂直後 鄉約에 관한 연구-高坪洞 동계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5.
- _____, 1990, “18세기 州縣鄉約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 박석두·이두순, 1995. 8, 「한말·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수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익환, 1984, “조선전기의 향규와 향규약고,” 「사학연구」 38.
- 박종기, 1987, “고려시대 촌락의 기능과 구조,” 「진단학보」 64.
- 박진우, 1988, “조선초기 面里制와 촌락지배의 강화,” 「한국사론」 20.
- 四方博, “李朝時代鄉約의 歷史と性格,”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14.
- 안병욱, 1986, “조선후기 자치와 저항조직으로서의 향회,” 「성심여대논문집」 18.
- _____, 1986, “19세기 입술민란에 있어서의 향회와 饒戶,” 「한국사론」 14, 서울대 국사학과.
- 유홍열, 1938, “조선 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9.
- 이경식, 1977, “16세기 지주층의 동향,” 「역사교육」 19.
- 이규대, 1990, “19세기 洞契와 洞役,”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 이상찬, 1989, “1894-5년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향회의 법제화 시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7.
- 이수건, 1978, “直村考-조선 전기 촌락구조의 일단면-,” 「대구사학」 15-16 합집.
- _____, 1984,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 _____, 1979, 「嶺南 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민족문화총서 2.
- _____,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 이영호, 1988, “1862년 진주농민항쟁의 연구,” 「한국사론」 19.
- 이우성, 1961, “麗代 百姓考,” 「역사학보」 14.
- 이이화, 1984, “19세기 전기의 민란 연구,” 「한국학보」 35.
- 이종범, 1994, 「19세기말 20세기초 향촌사회구조와 조세제도의 개편 -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류씨가 문서 분석 -」,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태진, 1983, “사림파의 향약 보급 운동-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4
- _____, 1972, “醴泉 開心寺 石燈記의 분석-高麗 前期 香徒의 一例-,”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에 재수록)
- _____, 1972·73, “사림파의 留鄉所 復立運動,” 「진단학보」 34·35.
- _____, 1983, “고려말 조선초의 사회변화,” 「진단학보」 55.
- _____, 1989, “17·18세기 香徒組織의 분화와 두레 발생,” 「진단학보」 67.
- 이해준, 1985, “조선후기 장흥 방촌의 촌락문서-호남지방 한 동족부락의 조직-,”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 _____, 1990, “조선후기 洞契洞約과 村落共同體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 _____, 1988,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동약의 성격-사족적 배경과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53·54합집.
- _____, 1993, 「조선시기사회사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동섭, 1969,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서민공동체로서의 계에 관한 연구-특히 이조시대를 중심으로,” 「논문집」 15, 전남대.
- 전형택, 1989, “17세기 담양의 鄉會와 鄉所,” 「한국사연구」 64.
- 정진영, 1982, “조선후기 향약의 일고찰-夫人洞洞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3.
- _____, 1985, “16세기 안동지방의 동계,” 「矯南史學」 창간호.
- _____, 1990, “18·19세기 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해체 과정-대구 부인동 동약의 분쟁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 _____, 1985, “조선 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대구사학」 27.
- _____, 1990,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3.
- 周藤吉之, 1941, “鮮初における京在所と留郷所に就いて,” 「加藤博士還曆紀念東洋史集説」
- 채웅석, 1986, “고려전기 사회구조와 本貫制,”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 최진욱, 1985, “중종조 향약 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 6.
- 한상권, 1984,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연구보고 R 353

한말-일제초

농촌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사례

찍은날 1996. 12. 펴낸날 1996. 12.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범 신 사 ☎720-9786~9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